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이미원, 김환수

2023년 12월



동북권·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 일용직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가 중심 -

- I. 개요
- II. 요약 및 함의
- III.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 IV. 인터뷰 참여자 일반현황
- V. 건설업 종사자 인터뷰
- VI. 부록

인사말

조길형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대행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압축 경제성장 이면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피·땀·눈물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풍족한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산재 희생자는 줄지 않아 지난해에도 2,223명의 노동자가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는 어느 업종보다 심각해 우리나라 전체 업종의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이러한 사망재해를 줄이고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동북권과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와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가를 만나 12차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며 종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건설현장의 안전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인터뷰 대상자가 적어 모든 건설현장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건설현장 관계자는 물론 정책 입안자 등에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산재예방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거름이 되길 희망하며 보고서를 펴내게 됐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에는 건설산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장의 수많은 희생 또한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건설사가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건설업종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산재와 가장 맞닿아 있는 현장의 노동자 그리고 사고예방의 최일선에 서 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살기위해 일하지만,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형과 실적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생명과 안전을 먼저 챙기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만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으로 산재는 예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의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참여자 여러분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 차

I. 개요	1
II. 요약 및 함의	4
III.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11
IV. 인터뷰 참여자 일반 현황	14
1.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14
1) 우리나라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14
2) 외국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17
2. 건설안전·보건관리자	19
V. 건설업 종사자 인터뷰	21
1.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21
1) 인터뷰 일시, 장소, 대상, 참석자수	21
2) 인터뷰 주요 질의내용	21
3) 한국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내용	21
4) 외국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내용	34
2.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	44
1) 인터뷰 일시, 장소, 대상, 참석자수	44
2) 인터뷰 주요 질의내용	44
3)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 내용	44
3-1)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 내용	44

3-2)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 내용	48
3. 건설안전·보건 전문가 인터뷰	59
1) 인터뷰 일시, 장소, 대상, 참석자수	59
2) 인터뷰 주요 질의내용	59
3) 한국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내용	59
 〈부록 1〉 질문지	 65
〈부록 2〉 202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사업 안내	75

I 개 요

1. 모니터링 추진 배경

- 전체 업종의 산재 사고 사망자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건설업에서 발생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2,223명이며, 이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 사고 사망자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건설업에서만 46%인 402명 발생
- 건설업에서의 재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
 - 사고 사망 원인중 떨어짐이 가장 많은 53%를 차지하고, 부딪힘이 12%, 무너짐이 7%, 물체에 맞음과 깔림·뒤집힘이 각 5%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는 재래형 재해가 반복되어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
- 건설업 재래형 재해가 계속되는 이유를 종사자 시각에서 파악 필요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건설안전·보건관리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종사자 시각에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

2. 모니터링 목적

-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종사자 시각에서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책제언을 실시

3. 모니터링 방법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포함) 인터뷰
-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
- 관련 전문가 인터뷰

4. 인터뷰 질의요지

- 일반현황
 - 나이, 경력, 월평균 소득 등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포함)
 - 작업 상 유해 또는 위험 요인, 건설현장 작업별 시설·설비, 안전보건수칙, 안전 관련 활동, 보호구 착용 현황, 산재 발생 시 처리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수건강진단 및 각종 지원사업 연계 수요 등
-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 고용형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의 차이·제약, 안전보건조치·활동·보호구 관련, 위험요인 대처 및 사고 처리 현황, 위험정보 전달 및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방식 등
- 전문가
 - 1, 2차는 모니터링 추진방향 조언, 현재의 건설안전·보건의 현황과 문제점 위주, 3차 인터뷰는 그간의 인터뷰 내용 리뷰와 이와 관련한 전문가적 대안 등

5. 모니터링 실시 과정

○ 전문가 인터뷰 3회,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5회, 안전·보건관리자 4회

차수	월일	인터뷰 대상	인원수
1차	6/15	전문가 간담회(전문가 1차)	8명
2차	6/27	전문가 간담회(전문가 2차)	6명
3차	7/17	건설업 노동자 인터뷰(일용직 1차)	7명
4차	7/19	건설업 노동자 인터뷰(일용직 2차)	6명
5차	7/21	건설업 노동자 인터뷰(외국인 노동자)(일용직 3차)	6명
6차	8/8	건설업 노동자 인터뷰(외국인 노동자)(일용직 4차)	3명
7차	8/28	건설업 노동자 인터뷰(일용직 5차)	5명
8차	9/20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안전관리자 1차)	5명
9차	9/22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안전관리자 2차)	5명
10차	10/5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안전관리자 3차)	6명
11차	10/20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안전관리자 4차)	5명
12차	11/10	전문가 간담회(전문가 3차)	3명
계			65명

※ 본 모니터링 보고서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련 전문가 등 일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에 기반해 작성한 것으로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정책 입안자 등에게 생생한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음

Ⅱ 요약 및 함의

1.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및 위험성평가 참여

- 소규모 현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장에서 TBM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는 용어 자체를 생소히 여기는 등 노동자 참여로 이뤄져야 하는 현장의 위험성평가는 미흡한 실정
- TBM 시 당일 작업의 대략적인 위험정보를 전해 들으며, 이는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어 당일 안전작업에 도움이 된다고 여김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요구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거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협박으로 응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함
- 익명으로 위험상황을 알리고 즉각 조치가 가능한 신고센터, 불시에 현장의 위험상황을 살필 수 있는 암행감찰단 운영 희망

○ 다쳤을 때 처리 방법

-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대부분 혼자 처리하거나 공상처리
- 심각한 사고는 대부분 산재로 처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100% 임금을 받고 번거로움이 없는 공상처리를 선호

○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

-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리한 작업지시 △안전조치 미흡 △서둘러서 △작업자의 부주의 때문이라 여김
- 보호구 지급, 안전조치 요구가 묵살되거나 해고 위협으로 돌아온 그동안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점은 본인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

○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

- 외국인 노동자는 건축 현장 인력의 50%, 소규모 현장은 100%에 육박할 정도라고 추산하며 조만간 외국인 노동자만으로 현장 인력이 채워질 것이라 우려
- 외국인 노동자가 더 힘든 작업에 투입된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그들로 인해 일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니고 있음

○ 개인 보호구 지급

- 안전모를 지급하는 현장은 많으나 안전화는 대부분 직영 노동자만 지급하고 일용직 노동자는 지급하지 않거나 서류 상으로만 지급
- 분진 작업에 따르는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장이 많음

○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정보 전달,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 대기업만 1시간 정도의 집체교육을 실시, 중소규모 현장은 받은 것처럼 서명만 하고, 소규모 현장은 교육 자체가 없음
- 위험정보 전달은 큰 현장은 조희나 TBM을 통해, TBM이 없는 작은 현장은 작업 시작 전 팀원이 모였을 때 구두로 간단히 이뤄짐
- 특수건강진단은 대기업에서만 받은 경험이 있고, 작업환경측정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큰 현장과 작은 현장을 구별해서 전문적으로 다니는지 여부

- 대부분 큰 현장과 작은 현장 구별 없이 일이 있으면 작업을 나가는데, 일부의 경우 보호구 착용 등 안전 관련 간섭과 지시가 많은 큰 현장을 기피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가 없는 작은 현장 선호

○ 힘든 점 : 음료수·화장실 이용의 어려움, 작업 중 휴식시간이 없음

- 마실 물도 없는 현장이 많음. 현장 내에서 물을 사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하루 작업시간

내내 마셔야 하는 무거운 물을 일용직 노동자가 다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큼

- 화장실이 별도로 없거나 멀리 있어 대소변을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 점심시간 이외에 휴식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휴식시간

○ 희망사항

- 정부에서 현장 감독을 자주 나와주길 바람. 감독 전에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해 놓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
- 반말, 고함, 욕설 등 비인격적 언행이 난무해 모멸감을 많이 느낌. 친절한 말투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소통하는 문화 조성 필요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0개월까지만 일을 하도록 함. 가능한 한 현장에서 길게 일하고 싶어함
- 퇴직공제금 제도가 모든 현장에 적용되길 희망

1-1)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 노동자와 대부분 비슷한 의견임. 아래는 공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인과 다르게 답변한 내용만을 기술

○ 다쳤을 때 처리 방법

-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하는 것은 한국인과 동일하나,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 크게 다쳐도 치료는커녕 임금체불 등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못함

○ 의사소통, 불만사항

- 작업지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지시 내용 확인이 안 될 경우 본인이 평소 하던대로 작업을 진행함

- 한국인에 비해 자신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여김
- 반장이나 관리자들이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욕설이 많아 견디기 힘들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은 대기업에서만 받으나, 한국어로 되어있어 대부분 알아듣지 못함
- 본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 내용은 항상 비슷해서 효과가 없다고 느낌

1-2) 중국 동포 외국인 노동자

○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 여김
- 하부 하청업자(오야지) 체계가 없어져야 ‘빨리빨리’ 관습이 사라지고 임금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의사소통

- 한국어에 영어, 일본어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처음 한국에 온 경우 알아들을 수 없음

○ 팀 구성, 일거리를 찾는 경로

-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중국동포(일명 로터리. 팀장)가 고향 지인 등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이 일거리를 구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 안전보건교육

- 대기업에서만 있는 안전교육은 항상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일부 사례 중심 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여김

2.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2-1) 800억원 이상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TBM과 팀 별 위험성평가 실시
-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가능토록 현장 곳곳에 무료전화번호 비치
- 안전관리 인력 충분, 안전관리자 서류 과중부담 비교적 적음
- 기특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로 보건관리자 업무 과중
- 스마트 안전장비는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여김

○ 안전보건관리비

- 세부 사용기준이 없어 혼란 발생, 개선방안 마련 희망

○ 노동자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 단기간 유동인구가 많고 공정이 수시로 변하는 현장 특성과 여러 현장에 걸쳐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 특성에 맞춰 특수건강검진, 배치전건강검진 등 노동자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필요

○ 외국인 노동자 소통문제

- 외국인 노동자 소통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길 희망

○ 안전보건교육

- 현장 상황에 안 맞고 어쩔 수 없이 서류 상으로만 실시하는 교육이 많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사실상 실행 불가능

○ 산재예방 활동의 장애물, 필요한 점

- 잦은 설계 변경은 안전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
- 노동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는 과실비용 적용 필요
- 버려지는 보호구가 너무 많음

2-2) 800억원 미만 현장 안전관리자

○ 위험성평가

-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는 참여가 어려워 대부분 서류만 존재
- 위험성평가는 직·반장들 위주로 실시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김

○ 작업중지, 작업중지권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 이후, 현장에서는 작업중지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사고 위험성 크게 상승
- 작업중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작업중지권 적용이 어려운 실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의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가중
- 원청사 별 협력업체에 배정하는 안전관리비 기준이 틀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금액을 보장하고, '하도급 안전관리비 요율제' 제도화 필요
- 안전관리자 임금을 제외하면 안전시설, 보호구에 사용할 비용이 없음
- 현장 소장이 안전관리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유용하는 경우가 있음

○ 과중한 서류 업무

- 과중한 서류 업무로 야근은 물론 퇴근 후 집에서도 작업
-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비한 안전활동 근거서류 마련에도 많은 시간 허비

○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검진은 정부 재정지원사업(디딤돌 사업) 이외는 자체 비용 부담 힘든 실정
- 작업환경측정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노출기준 이상의 데이터 값이 나오더라도 업체와의 협의로 노출기준 이하로 조정

○ 산재의 원인,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 불법 재하도급, 최저가 입찰제 문제는 안전 확보에 큰 악영향
- 불안정한 행동에 의한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게 과실비율 적용, 패널티를 부과해야 함
- 산안법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 관련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리감독자는 안전에 무관심하고 협조가 이뤄지지 않음
- 불안전상태·행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고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현장 소장,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실효적 교육 및 책임 부여 방안 필요

○ 현장 내 안전관리자로서의 어려움, 희망사항

- 개인보호구 쓰레기가 넘쳐남. 퇴직공제나 바우처 활용 등 대책 필요
- 외국인과의 소통 어려움, 전반적인 외국인 전담 교육 필요
- 공사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해짐
- 안전관리자에게 공정 변경 상황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정 별 안전관리에 어려움 발생
-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독립 조직체계 구축, 권한 강화방안 필요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데도 과태료가 적어 의도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이 많음
- 산재 발생 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희망
- 현장 인력 고령화 심각, 젊은 층 유입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허위로 산재처리 요구하는 노동자 색출방안 마련 필요
-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도 보수교육 필요
- 기초안전보건증을 위조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으므로 개선 필요

III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 건설현장 ‘위험상황 신고센터’ 운영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힘든 상황
- 현장 내 위험한 상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사진을 올리면 즉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건설현장 ‘위험상황 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필요
- 이때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익명 보장

■ 건설현장 ‘암행감찰단’ 시스템 도입

- 대부분의 노동자는 정부의 감독이 자주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는 점검 전에 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기 때문에 당일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
- 따라서 건설현장 ‘암행감찰단’ 등 불시에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장이 평소에도 정리·정돈,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암행감찰단’은 물론 정부의 각종 현장 감독 시 서류 점검보다는 안전시설, 종사자 인터뷰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점검과 감독 실시

■ 건설 노동자 ‘건강관리수첩’ 제도 도입

- 단기간 유동인구가 많고 공정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 특성과 여러 현장에 걸쳐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제도 개선
- 현재 배치전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에 대해 타현장에서 받은 동일 검진을 일정기간 다른 현장에서도 받은 것과 같이 같음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자 전용 ‘건강관리수첩’제도 도입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일생에 한 번만 받도록 되어 있는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보수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건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강구
- 건설현장에서는 형식적이거나 서류에만 존재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므로 건설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은 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건설업체 대표, 현장의 직반장(팀장),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제도화 필요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도 개선

- 재해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도면’ 제작, 공정 별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추산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사용기능항목 명확화
- 작은 현장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안전관리 활동에 사용할 금액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금액 보장을 위해 ‘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요율제’ 제도화 필요
- 버려지는 개인보호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일괄 지급방식에서 ‘개인구매 후 금액 보전’ 등의 개선책 마련

■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확보되는 시스템 구축

-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확보되는 적정공기·적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투입되어 ‘안전도면’을 제작해야 함. 또 이에 대해 현장에서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 설계안전성검토(DFS)를 일반공사와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거나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대장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프라 구축

- 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과 관련, 작업중지 기간동안 못 한 작업을 만회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무리한 작업을 강행, 위험률이 급상승하게 되므로 적정공기 산정 시 작업중지 기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불법 재하도급 근절, 원청사 직접 일괄시공

- 현재 건설현장은 불법 재하도급이 5단계까지 내려가는 실정으로 단계가 내려갈수록 업체의 이윤이 작아져 결국 부실시공과 불안전상태·불안전행동을 유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건설현장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해야 하고, 이는 원청사가 직접 일괄시공을 해야 실행 가능

Ⅳ 인터뷰 참여자 일반 현황

1.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1) 우리나라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1) 인터뷰 참여 :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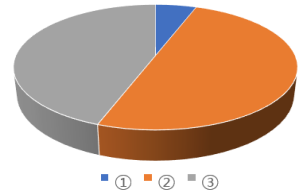
- 일부 문항 복수 응답

(2) 평균 연령 : 52.7세

- 응답자 중 20대인 27세 1명은 통계에서 제외. 포함 경우 평균 54.6세

(3) 일거리를 구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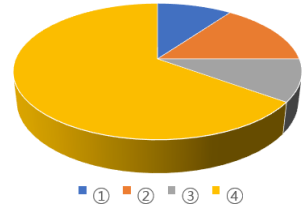
일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인원(명)	점유%
① 아는 사람을 통해서	1	6%
② 인력제공회사나 인력시장을 통해서	9	50%
③ 둘 다	8	44%



- 조사 대상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인 50%가 인력제공회사나 인력시장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응답자 44%의 노동자가 아는 사람이나 인력제공회사·인력시장을 통해서 일거리를 구한다고 답함

(4) 주로 일하는 현장의 규모(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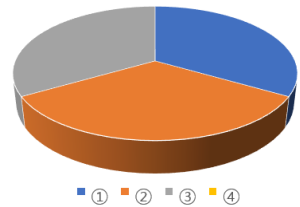
주로 어떤 규모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인원(명)	점유%
①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 현장	2	10%
② 1~2개 동의 원룸, 오피스텔, 상가 건축 현장	3	15%
③ 일반 소형 주택 공사	2	10%
④ 그때 그때 다르다	13	65%



- 조사 대상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65%가 본인이 원하는 규모의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규모에 상관 없이 그날 그날 일거리가 있는 현장으로 일을 나간다고 밝힘
- 본인이 희망하는 규모의 현장으로 일을 나가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대형 아파트 신축 현장 10%, 일반 소형 주택 공사 10%, 1~2개 동의 원룸·오피스텔·상가 건축현장 15%의 선호도를 나타남

(5) 현장 업무 경력

건설현장 업무 경력은?	인원(명)	점유%
① 1년 이상 3년 미만	6	33.3%
② 3년 이상 10년 미만	6	33.3%
③ 10년 이상 20년 미만	6	33.3%
④ 20년 이상	0	0%



- 조사 대상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현장 업무 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각각 33.3%임

(6) 월평균 수입 : 약 244만원

- 최근 1년간 최고 수입 평균 : 약 305만원
- 최근 1년간 최저 수입 평균 : 약 151만원

※ 해외에서 일한 1명의 경우 월평균 수입 600만원, 최근 1년간 최고 소득 1,000만원, 최근 1년간 최저소득 200만원은 통계에서 제외. 포함할 경우 월평균 수입 약 26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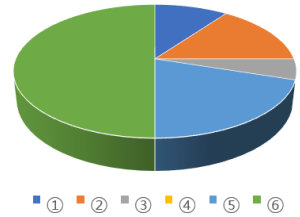
1년간 최고 수입 평균 약 343만원, 1년간 최저 수입 평균 약 153만원

(7) 산재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1%(11명)가 가입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39%(7명)는 현장 일을 시작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답함

(8)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복수응답)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처리?	인원(명)	점유%
① 현장 반장이 병원비 내고 치료해줌	2	10%
② 내가 자비로 치료했음	3	15%
③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줬음	1	5%
④ 내가 직접 산재 처리를 했음	0	0%
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줬음	4	20%
⑥ 다친 적이 없음	10	50%



-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다친 적이 없다고 답함¹⁾
-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살펴보면 공상처리가 가장 많은 40%, 자비로 치료한 경우가 그 다음 순위인 15%, 반장이 치료해 준 경우가 10%,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 준 경우가 5% 순으로 나타남

1)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요양급여의 기준으로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산재발생보고 기준으로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를 말하나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는 산재의 개념을 신체 일부가 부러지거나 절단되거나 끊어지는 등 중상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인터뷰 내용 참조) 것으로 나타남.

2) 외국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1) 인터뷰 참여 : 9명

- 국적 : 카자흐스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 몽골 3명, 중국 동포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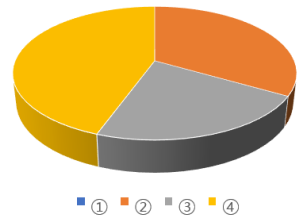
(2) 평균 연령 : 47.1세

(3) 체류자격

- 응답자의 가장 많은 비자 종류는 F-4(재외동포)·F-5(영주권)가 33%(3명), E-9(비전문취업)과 F-6(결혼이민)이 각각 22%(2명), H-2(방문취업)와 기타가 각 11%(1명) 순으로 집계됨

(4) 한국 체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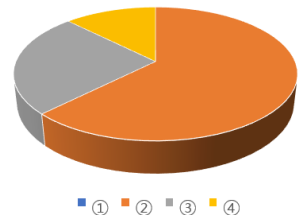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는지?	인원(명)	점유%
① 1년 미만	0	0%
② 3년 미만	3	33.3%
③ 5년 미만	2	22.2%
④ 10년 미만	4	44.4%



- 응답자의 한국 체류 기간은 10년 미만이 가장 많은 44%, 3년 미만이 33%, 5년 미만이 22%를 보임

(5) 일거리를 구하는 경로(무응답 1명 제외)

일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인원(명)	점유%
① 고용센터를 통해서	0	0%
② 아는 사람을 통해서	5	62.5%
③ 인력제공사나 인력시장을 통해서	2	25.0%
④ 2, 3번 모두	1	12.5%



- 외국인 노동자가 일거리를 구하는 경로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로 약 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인력제공회사나 인력시장을 통해서 25%, 아는 사람과 인력제공회사나 인력시장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12.5%를 차지함

(6) 주로 일하는 현장의 규모(무응답 1명 제외)



- 조사 대상 외국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는 한국인과 비슷하게 현장의 규모에 상관 없이 그날 그날 일거리가 있는 현장으로 일을 나간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50%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규모는 1~2개 동의 원룸·오피스텔·상가 건축현장이 약 38%, 일반 소형 주택 공사 현장은 약 13%로 집계됨

(7) 현장 업무 경력(무응답 1명 제외)



- 외국인 노동자 응답자의 건설현장 업무 경력을 살펴보면, 3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이 가장 많은 75%를 차지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이 25%를 차지함

(8) 월평균 수입 : 약 300만원(한국인 약 244만원)

- 최근 1년간 최고 수입 평균 : 약 419만원(한국인 약 305만원)
- 최근 1년간 최저 수입 평균 : 약 188만원(한국인 약 151만원)

※ 이를 한국인과 비교해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에 비해 월평균 수입은 약 56만원 높고 최근 1년간 최고 수입 평균은 114만원 높으며 최근 1년간 최저 수입 평균은 약 37만원 높게 나타남

(9)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무응답 1명 제외)

- 한국인과 비슷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75%(6명)가 다친 적이 없다고 답함
-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살펴보면 현장 반장이 치료해 준 경우와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 준 경우가 각 12.5(1명)로 나타남

2. 건설안전·보건관리자

(1) 인터뷰 참여 : 21명

- 800억원 이상 공사 8명, 800억원 미만 13명

(2) 평균 연령 : 46.0세

- 800억원 이상 안전·보건관리자의 평균 연령은 43.4세로 800억원 미만 평균 연령 47.5세보다 4.1세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경력 평균 : 8.8년

- 800억원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평균 경력은 9.4년으로 800억원 미만 8.4년보다 1년 정도 많음

(4) 고용형태



- 조사 대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57%는 정규직이며 그 다음 순위가 현장채용직 24%, PJT 채용직 19%로 집계됨

2) PJT 채용직이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한 공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공사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거나 연장되는 형태의 고용형태를 말한다.

(5)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의 평균 규모 : 1,400억원

- 800억원 이상의 현장 평균 규모는 3,600억원, 800억원 미만 현장 평균 규모는 215억으로 현장 평균 차이가 약 17배임

(6)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의 평균 일일출력인원수 : 224명

- 800억원 이상 현장의 평균 일일출력인원수는 485명, 800억원 미만 현장의 평균 일일출력인원수는 49명으로 평균 차이가 약 10배로 나타남

(7) 월평균 수입 : 493만원

- 800억원 이상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월평균 소득은 505만원, 800억원 미만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월평균 소득은 485만원으로 약 2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8)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 소득



- 조사 대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월평균 소득을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가장 많은 531만원, 그 다음이 현장채용직 452만원, PJT 채용직이 430만원으로 분석됨
- 현장채용직과 PJT 채용직의 월평균 소득은 22만원 차이가 나는데 반해 정규직과 PJT 채용직은 평균 101만원의 차이가 남

V

건설업 종사자 인터뷰

- 일용직 노동자,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전문가 중심 -

1.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1) 인터뷰 일시, 장소, 대상, 참석자수

차수	월일	인터뷰 대상	인원수
1차	7/17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7명
2차	7/19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6명
3차	7/21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외국인 노동자)	6명
4차	8/8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외국인 노동자)	3명
5차	8/28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5명
계			27명

2) 인터뷰 주요 질의내용

- 인터뷰 대상자 일반 현황, 작업에 따르는 유해 또는 위험 요인, 건설현장 작업별 시설·설비, 안전보건수칙, 안전 관련 활동, 보호구 착용 현황, 산재 발생 시 처리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수건강진단 및 각종 지원사업 연계 수요 등

3) 한국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내용

○ TBM 활동은 참석자 모두 잘 알고 있으나, 위험성평가는 용어 자체를 생소해 하며, 평가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함

- 소규모 현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TBM 실시
- TBM 시 대략적인 위험 정보를 전해 들으며, 당일 안전작업에 도움

“큰 현장은 TBM을 100% 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침 조회할 때 주의점이나 오늘 작업 뭐뭐 한다 뭐뭐 조심해라

전체한테 얘기를 하고, 팀을 이끄는 분이 있어요. 그 팀들은 조별로 조회 끝나고 모여서 오늘 이거 이거 하는데, '우리 작업 그런 식으로. 이거 조심해주면 좋겠다' 라고 지시하고."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니까 도움이 되죠.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하라고 주의사항 주면 인지를 하죠. 감전돼서 죽을 일은 없잖아요."

"교육하고 TBM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무슨 작업하고 그런 걸 안내해 주거든요.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TBM은 현장 관리자들이 같이 해요. 1번부터 4번 있으면, 오늘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 주의해야 할 부분들 얘기해주고 듣는 사람들은 다 같이 복창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걸 하고 나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기준이 잡히게 돼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약간 헤맬 때가 있죠.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TBM이 깔려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TBM이라고 되어 있고 자료를 띄워져요. 전날 주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웬만한 데서는 다 해요. 개인 인테리어 말고는 하긴 합니다. 하는데, 건성이라서 그렇지. 아침에 모여서 '안전 고리 같은 거 있으면 걸고, 난간도 잘 보고' 말은 다 해요. 막상 들어가서 '이거 안 댔는데요?' 하면 '다음에 하면 돼, 얼른 와 일단 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막상 작업 들어가면 대충 대충 넘어가는 거죠."

"위험성평가는 참여 안 해봤는데, 사람들 모여서 교육 할 때 지나가면서 하는 거 듣긴 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대기업) 같은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가면 TBM 할 때 오늘 용접을 하니까 밑에 불 튀면 깔고 이런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만 듣고 팀장이 사인하고 했다고 하는 거지. 다 적고 하진 않아요. 가서 편하게 들어가서 사인 해라 (하죠). TBM 할 때 같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류만 작성하는 겁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현장도 안전 관련해서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안전사고와 직결되거든요. 얘기를 안 하고 했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하고 또 치료비가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에요. 패널티가 세다 보니까."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힘든 상황

- 위험상황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요구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거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협박으로 응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함
- 작업중지권을 직접 행사하는 대신 익명 제보 가능한 '위험상황 신고센터' 운영 제안
- 노동자는 불이익이 두려워 위험상황 대처를 주장할 수 없으니 위험한 작업환경 감시를 목적으로 '암행감찰단' 투입 제안

"어떻게 작업중지권을 얘기해요? 저희들이 그 얘기 못 해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니까."

"위험한 거 보고 대책 좀 마련해 주시죠 하면 '위험하네' 하고. 다 아시죠 위험하다는 것을. 말을 해도 '바쁘니까 다음에 해줄게. 급하니까 일부터 해' 해서 다치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고층 건물의 난간대 문제거든요. 난간대가 한 쪽은 되어 있는데 한 쪽은 안 된 데서 일을 여러 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몸 보호 차원에서 아무래도 일 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현장에 안전 벨트를 메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일을 구걸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책 잡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일 못하고 잘리는 거예요 바로.”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떤 아파트 현장에서는 30층부터는 철근을 얼마나 안 넣는지 제가 그걸 며칠 동안 잘랐어요. 철근 자른 걸 버려야 하잖아요. 설계는 다 해놓고 똑같이 철근을 올렸는데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위에는 하중 안 받잖아요. 그래서 빼는 건지? 어느 현장이든 철근 다 남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중국 사람 쓰거든요.”

“급하니까 뛰지 말고 빨리 빨리 와. 대충 해.’ 그러다가 다치면 ‘야 빨리 병원 데리고 가. 치료비 내줄게’ 해버리니까 알릴지 수 없는 거고. 다치면 신고 센터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요새 ○○ 같은 데는 현장이 위험하면 직접 사진 찍어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걸 해놨거든요. 나라 같은 데서 그 건물 어디가 위험하다, 일을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면 찍어 보내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일하다가 위험해서 안 되겠는데, 말 하면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작업중지권 있잖아요. QR 찍어서 사진 찍어서 거기다 신고할 수 있게. 익명이 보장돼야 되겠죠. 사진 찍어서 QR로 옮겨 보내면 어느 현장 이런 상태 그런 식으로만 될 수 있으면. ‘(노동부에서) 신고 들어왔으니까 가 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QR로 노동부에 보내면 비밀 보장만 된다면 좋죠.”

“암행감찰단들이 한 번씩 투입돼서 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면 다치는 사람들 비밀비해합니다. 많이 다쳐서 피가 철철 나야 병원에 가는 것이지 웬만큼 다쳐서는 자체 처리하고 말죠. 어떨 때는 먼지로 숨이 막히고 안 보이니까 일을 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송풍기 하나 설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먼지 때문에 일을 못 할 정도의 현장에 암행감찰단들이 와서 이런 거를 보고하고 조치해 주길 바라거든요. 가장 빠르게 시정을 하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암행감찰단을 빨리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에 대한 직·간접 경험과 다쳤을 때 처리 방법

- 심각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하나,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대부분 혼자 처리하거나 공상처리
-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산재보험 신청 과정이 없어 번거롭지 않고 일을 못 하는 기간에도 100% 임금을 지급 받기 때문

“피가 막 나는 데도 얘기 못 하고 그냥 나 혼자 저기 한다고. 현장에 일하면서 다치지 않겠어요? ‘조심해야지’ 하고 끝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자기 돈으로 치료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칠 때가 언제냐면요. 아침에 타설하려면 철근작업 하고 철근 한 자리 청소도 해야 하고 하잖아요. 9시 10시 되면 레미콘 오잖아요. 그 전날 다 해야 하는데, 늦게 끝난다 말이에요. 철근이나 전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다음 날 타설하기 직전에 다 해야 해요. 그때 다니다가 다치는 거예요. 조금 다친 거 가지고 누구한테 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완전 깨져서 티 나지 않는 이상은 말 못 해요.”

“어떤 기공이 빔 큰 걸 포크레인 찍어서 내리잖아요. 그걸 돌려주는데 살짝 부딪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손가락 뼈가 나간 거예요. 그분 그만됐어요. 다치면 ‘조심하지’ 하고 병원비 처리해주죠. 겉으로는 그렇게 해줘요. 내면적으로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잘라 버린다고요.”

“위험 현장은 기본적으로 2인1조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팔을 많이 다치셨어요. 뼈 쪽에 문제가 있으셨는데, 병원 가서 깁스를 해야 할 정도인데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옆에 앉혀 놔요. 오셔서 일당 받고. 출근 도장만 찍어라 이거예요. 산재처리 가면 심각해지니까. 치료를 받긴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와 통근 치료를 받는 건 다른 거죠. 어쨌든 그 분은 똑같이 5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오셨어요. 보름 동안.”

“사고를 많이 봤어요. 복숭아 뼈 부러진 사람 6개월 정도 가잖아요. 그런 것도 공상처리 했어요. ○○건설(대기업)인데, 상까지 받고 공사 완전히 끝날 때쯤 높은 데 뛴다고 페인트 통 같은 거 밟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복숭아 뼈가 부러진 거예요. 돈 많이 줬어요. 한 1500, 병원비 다 대주고. 대부분 공상처리 해요.”

“사다리 작업 같은 거. 무조건 2인 1조예요. 사다리 잡아줘야 하는데, 보통 혼자 해요. 내려갈 때 무서워요. 다치는 사람 굉장히 많지.”

“사다리 타면 2인1조로 해야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일일이 따지면서 일 할 순 없거든요.”

“10년 전에 절단기로 철 자르다 손가락이 절단된 걸 봤는데, 외국인 노동자인데 보험도 그때 당시에 없었고, 접합은 했는데, 사람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해서 다음부터 정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절단기.”

“비 오는 날 차단기를 내렸다 생각하고 동료가 일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만졌는데 감전이 돼서. 다행이 몽둥이로 제지해서 죽진 않았어요. 병원에 1달 동안 입원했었는데, 감전이 돼서 그런 건 피부가 정말 비위 약하신 분은 못 봅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 일반 벽돌로 된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1층까지 내려갔는데 밑에는 이미 엘리베이터 피트 공구리를 쳐놔고, 거기 1층까지 스카이가 내려왔는데, 그 무게를 못 이겨서 그냥 밑으로 깔려서 큰 일 날 뻔 한 적 있거든요. 왜 나면 엘리베이터 피트 위에 큰 오비끼(산승각)를 대고 합판을 댔는데 오비끼가 옹이가 쳐서 힘을 못 받고 쏟아져서 순식간에 엘리베이터 피트로 떨어져서 같이 일하던 분이 위에 있고, 살짝 허리가 꺾인 정도지. 큰 일 날 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작업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3층 벽돌 하는데 또 다루끼(각재)로 사다리를 대는 거예요. 탁 치면 그냥 무너지는 건데, 그 전날 사고를 당했음에도 돈 몇 푼 아끼려고. ‘우리 못 하겠다’ 했더니만 그때서야 아시아(비계) 임대해 와서 작업을 했어요. 안전에 대한 감각 없이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는 현상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항상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자기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일하면서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 백구(포크레인)라고 철거하는데 쓰거든요. 보통 철거를 하면 안에 들어 있는 고철, 구리 이런 건 따로 팔거든요. 때려 부셔서 이쪽에 놓으면 그 가운데 고철이나 구리나 이런 걸 사람들이 빼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보통은 여기를 때려서 이쪽에 놓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여기 때리고 중간에 놓는 거예요. 거기서 작업을 하면 백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위험하면 집에 가면 되는데, 그날 하필이면 오전에 다른 걸 하고 그걸 해서 일 끝날 때 돼서 집에 가지도 못 하고, 그때 신경이 곤두서서 일할 생각 없이 그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잠깐 다치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백구는 죽어요. ○○경찰서 철거하는 곳이었던데요. 신고할까 생각했었어요.”

“포크레인 작업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게 사고가 몇 번 나서 요즘에는 작업반경에 못 들어오게 막는 분 있어요. 큰 현장은 100% 있는데, 예전에 안내하시는 분이 백구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들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위험하죠. 기사 분들은 못 보거든요.”

“손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부러졌어요. 3개월 쉬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산재 요건이 됐었는데, 간곡한 부탁으로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인맥이잖아요. 작업을 못 하니까 3개월 동안 재활도 해야한다 하더라고요. 못 하니까 월급은 80%는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공상처리 했죠.”

“위험한 작업에서 빵 때리는 게 있어요. 그거 하라 하길래 여기 때리면 진동으로 위에 있는 거 무너질 거 같다고 하기 싫다고 하는데, 금방 하니까 해달래요. 들어가서 세 번 때렸는데 바로 무너진 거예요. 허술한 구조물이라서 겨울철이라 옷도 두껍고 안전모도 써서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어쨌든 하기 싫다고 했는데 들여보내서 다쳤으니까 한 2주 공상처리 했어요. 일 안 하고 일당 받고.”

“저는 문짝 나르다가 현장이 너무 복잡해서 치우고 하자 했는데, 그냥 한다고 해서 나르다가 넘어져 문짝에 깔린 적 있었거든요. 그때도 공상처리했어요. 회사에서 얼마 주고 그러 식으로 했지. 산재까지 가 본 적 없어요.”

“내 친구 한 명도 현장에서 여기 눈에 (나무가) 찢려서 이렇게 부었는데, 하루 지나서 가니까 여기서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개도 못 받을 뻔 했어요. 의사한테 가서 세균 오염이라는 걸 받아서 제출해서 공상처리 했었던데요. 그런 것도 보니까 다치면 바로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야지, 하루 지나면 여기서 다쳤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해서 그 친구 개고생 했거든요.”

“노동자도 공상처리를 선호해요. 산재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럴 바에야 조금 다쳤는데 한 달 공상처리 받고 차라리 그걸 원하고.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하면 월급의 70% 받잖아요. 공상처리하면 일당 100% 주니까.”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는 장애가 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 공상처리하고 대충 몸 추스르고. 100%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게 훨씬 노동자에게 편하고 유리해요. 100% 이득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본 거 중에 제일 어렵게 다친 거 한 명 봤는데, 그 양반 겨울에 현장에서 ‘주머니에서 손 빼고 걸으세요’ 맨날 교육을 하거든요. 손 넣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팔꿈치 나갔어. 산재 받았어 어쩔 수 없이. 몇 개월짜리니까. 밀이 쇠였거든요. 구멍 뚫어서 쇠덩이 덮어놔는데 거기서 넘어져서. 큰 현장에서 조희 끝나고 정확하게 30초 후에 일어난 거예요.”

○ 사고 발생 이유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리한 작업지시 △안전조치 미흡 △서둘러서 △작업자의 부주의 때문이라 여김

- 보호구 지급, 안전조치 요구가 묵살되거나 해고 위협으로 돌아온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대요. 보기에 위험한데 거길 들어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뭐 두 삼 쓰니까 무너져서 깔려서 많이 다쳤었죠. 무리하게 작업지시를 해서, 본인이 부주의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무리한 작업지시가 많은 편이에요. 회사에서 공기를 맞추다 보면 여러 공정 팀이 겹칠 때가 있거든요. 앞 뒤로 팀들이 들어와서 부딪히게 되면 현장에서 일을 서두르게 되죠.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인원 총원(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을 할 때 6~7사람이 하는 걸 2~3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은 자기가 조심 안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업주가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안 한 경우에 다치는 경우가 많겠죠. 개인은 항상 조심을 하니까 가장 큰 원인이 건설업자가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사고나는 건 일단 서둘러서 그런 거죠. 위에서 뭐 떨어져서 하는 건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안 한 거니까 그런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자잘하게 다치는 건 서둘러서요. 조심해서 서서히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빨리 해야 하니까, 빨리 갖다 줘야 하니까 서둘러서 뛰다가 다치고.”

“내가 몇 십년 했는데 괜찮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진짜 많아요. 환경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방심하면 다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 같아요. 노동자들도 주의사항 같은 건 귀 기울여서 듣고, 사업자들도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이고,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거죠. 보호구도 기본으로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돌발사항이 언제 될지 모르고 안전모는 반드시 줘야 하고요. 안전화 같은 경우, 안전에 관련된 모든 용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켜야지, 다른 데다 핑계를 하면 안 되죠.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같아요. 오늘 하루 일 나갔으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도 중요한데 내 몸 다치면 내가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더 먼저 해야죠. 위험한 건 안 하는 게 좋고, 얘기를 해야죠.”

“몸을 잘 사려야죠. 서두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험하니까 안전모도 주세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현장 상황에 맞춰서 내가 몸을 사려야죠.”

○ 한국인 노동자가 바라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문제점

-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아 조만간 외국인 노동자만으로 현장 인력이 채워질 것이라 우려
-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큰 현장은 인력의 50%, 소규모 현장은 100%에 육박할 정도라고 추산
- 외국인 노동자가 더 힘든 작업에 투입된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그들로 인해 일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니고 있음

“목수의 70~80%가 중국사람이에요. 아파트는 90%고. 목수가요. 대리석 붙이는 데는 70~80%가 몽골 사람이에요. 기술직이 전부 그래요.”

“옛날 목수들 일 할 때는 합판으로 했어요. 무겁지 않았거든요. 이게 폼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힘들어하고 싫어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 배우려고 안 하니깐, 중국동포들은 돈 되니까 다 목수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목수, 철근으로. 거의 장악을 했어요. 코로나 때 동포들 들어가서 못 나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형틀 일 현장이 마비가 됐었어요.”

“그 사람들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뿔뿔 뿔쳐서 팀이 와해될 일도 없고.”

“3군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는 거의 목수, 철근, 타설 다 중국인이예요. 팀장만 한국 사람이고. 웬만한 5~6층짜리 단독 두 개 필지는 100% 중국동포고. 현장 직영 반장만 한국 사람 한 사람, 어떤데는 직영 반장까지 중국동포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하는 건 겉으로는 이상 없는 거 같아요. 안에 실질적으로 절대로 꼼꼼히 안 해요. 학교 건물인데 관급인데, 그건 〇〇사에서 철근 레미콘 제공을 해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이에요. 팀장만 한국 사람이고. 땀땀해야 해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땀땀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 엔지니어인데, 중국동포 일하는 사람 밑에 시다바리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해 놓는 거 땀땀하고 그런 거 한다고요”

“지금은 강남 쪽에도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거기 소장이 중국 사람인 걸 봤어요. 작업지시를 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혼났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소장으로 앉혀 놔줬죠. 몇 층 안 되는 건물을 지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장이 중국 사람이니까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조그만 데는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철근, 목공하는 사람이 타설 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해요. 자기네들끼리 다 있어서 한국 사람 하나도 안 써요. 일반 5~6층짜리 건축 있잖아요. 조그만 건축 한국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저희는 나이가 먹어서 어지간한 일은 하는데,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쉽게 말해서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대로 가서는 건축기술직이 머지 않아서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술자가. 기술을 안 배우려고 해요.”

“지금 한국 기술자가 타일하고 내장목수 그런 것은 90% 이상이에요. 그 이외에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장목수나 타일은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타일 기술자가 자기 친한 친척이나 동생이나 그런 사람은 가르쳐 주지만. 3년을 다녀도 기술을 안 가르쳐 줘요. 외국 사람이 기술을 못 배워. 내장목수도 안 가르쳐 줘요. 형틀목수는 밖에 폼 붙이고 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해요. 중국 사람들 2년이면 다 기술자 돼요. 돌 붙이는 건 힘이 들어요. 대리석 붙이는 건 몽골 사람이 힘이 좋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몽골 사람을 밑에 부려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몇 년이 흐르면 한국 사람은 기술자가 없을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저희 인테리어 경우는 10명이면 2명 정도. 다른 공사는 절반이 넘어요. 저희쪽은 전문적인 건 안 하고요 벽지, 철거. 철거라고 하는 게 포크레인 그게 아니라 빠루로 뜯어 내거나 굵어 내거나 실어 나르거나.”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50% 정도 돼요. 중국 사람이 특히 많아요.”

“곤방(짐 나르는 일) 80%는 몽골 사람들이예요. 힘이 좋아요. 한국사람 40키로짜리 시멘트 1~2개 올리면 몽골 사람들은 3개씩 올리거든.”

“외국인 노동자랑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죠.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3D 업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걸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장점으로 보고 있죠.”

“우리같이 일당쟁이 하는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돈이 안 오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맨날 돈이 그 자리다. 올라가질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은 푸대 2개씩 올리고 곤방하라고 하면 환장하거든요.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올렸는데, 못 해요?’ 그러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힘들면 안 하면 되고, 본인 나라로 가면 되고, 희망이나 있지. 벌어서 자기 나라로 가면 물가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희망이나 있지. 우리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벌어도 맨날 허우적대고 있는데.”

○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일반 현장에서 회사 직원들은 모르겠는데 일용직은 절대 주지 않아요.”

“저도 퇴직하고 이거 한 지 7~8년 됐어요. 그런데 인력 나간 사람은 한 마디로 좀 사람 대접을 안 해요. 특히 안전장비(보호구)를 안 줘요. 안전화도 안 주고. 분진이 많이 나는데 가서 마스크도 주질 않아 일용직은. 일용직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안전화가 없는 사람은 안전화를 줘야 해요.”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안전화를 신으라고 잠깐 줘. 다시 회수해 가. 절대 주지 않는다고. 사진만 찍고 다시 수거해 간다고. 그런데 분진이 너무 많은 데는 방진 마스크를 필히 줘야 하거든요. 절대 주지 않아. 줘도 쓸 수 없는 마스크를 준다고. 보호구, 마스크 그런 것을 좀 필히 정책에 반영을 해서 주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보통 1군 회사에서는 보호구를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장비는 거기 놓고 나오게 되어 있죠. 안전화 같은 경우는 주지 않죠. 안전화는 우리가 이제 본인 돈으로.”

“ABC급으로 따지면 C급 정도 되는 회사는 사람한테 대한 대우가 열악합니다. 장갑 달라고 하면 장갑 안 가지고 왔냐고 반문을 합니다. 거기서 지급해주는 것을 받고 일을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도 나빠도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식 직원들한테는 전부 다 지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일용직)는 거의 지급되는 게 없어요. 어떤 데는 장갑 마스크 주는 데는 안전화는 아예 없고. 안전모는 거기서 쓰고 거기서 벗어 놓으면 되니까 우리가 안 사도 되지만, 안전화 장갑 마스크 이걸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일용직 가방 메고 다니잖아요. 안전화가 크니까 가방 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안 줘요. 꾸준히 가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사람이 바뀌니까 오는 사람 신발을 준비했다가 하나씩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사실 이해합니다.”

“인력사무실에서 나가도 잘 하고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 챙겨줘요. 그런 분들은 한 현장에서 몇 개씩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위험 정보 전달

- 대기업만 1시간 정도의 집체교육을 실시, 나머지 현장은 서류만 갖추고 소규모 현장은 교육 자체가 없음
- 위험정보 전달은 큰 현장은 조회나 TBM을 통해, TBM이 없는 작은 현장은 작업 시작 전 팀원이 모였을 때 구두로 간단히 이뤄짐

"현장에서는 교육이라고 해봤자 진짜 형식이죠. '조심하세요 2인1조로 하세요' 정도. 실습이나 이런 건 없고. 교육 시간도 없어요. 대기업은 1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밑에 중소기업체들은 아침에 혈압 재고 간단히 화장실, 흡연장 어디고 작업장 안에서 담배 피우지마 그러고 끝. 한 20분. 소규모 가면 없어요. 사인은 다 하죠. 거기 사인대로면 우리는 현장 가지마자 안전모, 장갑, 안전화 다 지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니까."

"1군에서만 교육해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조심하라 하는데, 2~3군은 그런 것도 없어요. ○○동에 가면 철거 한참 하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덤프 싣고 하는데, 그냥 와서 물 뿌리는 거예요. 뭘 조심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관리자도 없고 보고 있으면 살 떨린다니까요."

"교육이라고 해 봤자 지휘자가 이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정도만 하지. 앉아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 사례 전파 이런 건 거의 없죠. 도급의 도급의 업체들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비용이고 그런데 1시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1시간 동안 차라리 섹터를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안 하죠. 안 해요."

"(위험 정보 전달은) 조회 시간에. 오늘은 거기 있으니까 위험할 거 같다. 비가 온다고 하면 누전 조심하라고."

"(작은 현장은) 일 시작 전에 새참을 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뭐 뭐 조심해야된다 그러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오늘은 어디까지가 지정된 범위니까 이것까지 하는데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똑같아요. 일 시작하기 전에 옷 갈아 입고 담배 피우는 시간에 작업 책임자들이 같이 담배 피우거나 먹으면서 미리 얘기를 해요."

"중간에 불가피하게 있는 건 있죠. 뭐 철거 했다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전화로. 위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는 게 어떠냐? 저희는 이것만 마저 하겠습니다.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질 때도 있고."

"(작업 중간 위험정보 전달은) 작업자가 말하기도 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벽 같은 거 오함마 때리면 튀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알려주고. 무턱대고 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 마실 물, 작업 중 휴식시간, 화장실 이용 등

- 마실 물도 없는 현장이 많음. 현장 내에서 물을 사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하루 작업시간 내내 마셔야 하는 무거운 물을 일용직 노동자가 다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큼

- 점심시간 이외에 휴식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휴식시간임
-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화장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물을 비치를 해 놔야 하는데. 물 달라고, 미치는 거지. 물론 사다 주는 데도 있지만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 기본적인 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 없는 현장도 많아요. 내 돈으로 사 먹어야 해요. 사 달라고 하니 양아치 동냥하는 거 같고 그런 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구걸이에요.."

"관리자들은 자기들은 힘든 일을 안 하니까 목이 많이 안 타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목 말라 죽겠는데. 물도 안 준다고, 기본적인 거."

"휴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지칠 때까지 일해야 해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더 하고 휴식이 없습니다."

"힘든데 말을 못 하는 거. 아 힘들어 죽겠는데, 쉬었다 하면 좋겠는데, 말을 못 해요. 휴식시간을 정해주면 좋은데, 일하다 보면 괜히 쉬면 눈치 보이니까 말을 못 해요. 굉장히 힘들죠."

"무거운 걸 같이 들고 하는데 팔 아파 죽겠는데 손가락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들고 있으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 때문에, 현장 안에 흡연장이 없는 데가 있어요. 담배 피우러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러면 그때 휴식시간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외에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에 10분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신호수는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특별히 힘든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쉬지를 못 하고 계속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이럴 때 교대 할 사람이 필요한데, 교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면 두 명을 불러서 교대를, 쉬어 가면서 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쉬는 시간 없이 일만 시키니까."

"저도 얼마 전에 신호수 갔었는데. 가면 계속 신호하고 몇 시간 서 있다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앞에가 흔들려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두리번 했더니 어지러워요. 쉴 시간이 필요한데, 쉬지도 못 하겠고. 교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휴식) 요구하면 다 싫어하는 눈빛이 보이니까 말을 못 해요."

"화장실은 없어요 아예. 있어도 더러워서 가기도 싫어요 진짜. 큰 현장은 화장실 샤워실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식당이나 가까운 데서 (이용해야 하고), 간이 화장실은 진짜 더러워요."

○ 특수건강진단은 대기업에서만 받은 경험이 있고, 작업환경측정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큰 업체는 보통은 아침에 가서 혈압이 높게 나온다, 그런데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병원 가서 소견서 떼어와라' 하는 정도고, 혈압 안 높으면 교육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피검사 건강검진 다 받고 이런 경우는 나이를

60세 제한을 뒀는데, 60세가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 받고 피검사 하고 그러는 거지. 그 이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가서 바로 혈압만 안 높으면 바로 교육 받고 일해요.“

“대형회사에서는 심전도, 폐활량, 청력 다 진찰하거든요. 내일 모레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오늘 가서 검진을 받아요. 미리 가서 검사를 다 받아야 해요.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해야 넘어가더라고요.“

“검진 받게되면 큰 병원에서 자가 검진표를 발급해줘요. 여기 핸드폰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문진표를 다 작성해서 찍어서 출근해야 해요.“

“○○ 거기는 차(검진전용)가 있어. 그렇게 받았어.“

“조그만 데는 무슨 얘기 하는지. 철근 같은 거 하면 검사고 뭐고 없어. 인테리어 회사 이런 데는 그런 검진 전혀 안 해요. 철거도 안 해.“

“특수건강검진 받은 쪽에서는 건강검진 받는 사람이 빠지면 안 되고. 일반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은 빠져도 아무 상관 없어요. 특수건강검진 받는 데서는 사람을 차출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귀가 난청이 됐는데요. 옛날에 지하철 공사하는데 땅 팔 때 포크레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현장에 7개월 있었어요. 그때 일하면서 이비인후과 그것도 내 돈 들어서 3~4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약이 없대요. 그리고 어떤 노무사 분이 모르고 전화를 했겠조. 몇년 안 됐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없대요. ‘여기 와서 얼마나 했습니까?’ 한 달 했습니다. 1년 했습니까다라고 답하면, ‘한 두 달 해서 귀가 그렇게 난청이 되지 않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회사를 옹호하기 위한 변명인 것이죠.“

○ 일용직 노동자가 느끼는 큰 규모 현장과 작은 규모 현장의 장단점

- 큰 현장과 작은 현장 구별 없이 일이 있는 곳으로 작업을 나가게 되는데, 현장 특성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고 밝힘

“사람마다 다른데, 큰 데가 편한 데가 있고 작은 데가 편한 데가 있고, 자기한테 맞는 데가 있고. 큰 데는 그렇게 힘든 걸 잘 안 시켜요. 작은 현장은 다 해야 해요.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데 안전문제나 이런 거 까다롭게 하니깐 그건 싫고. 일 하는 거 싫은데 먹고 살려고 나가는 거죠“

“큰 현장은 시간 딱 지켜야 하는데, 작은 현장은 끝나면 일찍도 보내주고, 막걸리도 한 잔씩 사주기도 하고. 큰 현장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큰 현장은 층층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놓는데 작은 현장은 아니고.“

“큰 현장은 위험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안전팀이 와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가요 하지 말라고. 작은 현장, 빌라나 오피스텔 짓는 데는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해요. 벨트도 안 주고 높은데 올라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게(개인보호구)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작은 현장은 보호구 지급은 아예 없죠. 사람(관리자)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지.“

“큰 데 가면 관리자들 돌아다니면서 안전모 써라, 안 쓰면 퇴출시키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데는 관리자가 없어요. 큰 현장 같은 데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를 해요. 교육도 하고,

그런데 자잘하고 2~3일 하고 끝낼 때는 빨리 끝내고 빨리 빠져야 돈도 되고 하니까 사람도 맨날 하루 하루 부르고 하니까 신경 안 씁니다.“

○ 힘든 점, 희망사항, 기타

- 정부에서 현장 감독을 자주 나와주길 바람. 정부 감독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
- 반말, 고함, 욕설 등 비인격적 언행이 난무해 모멸감을 많이 느낌. 친절한 말투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소통하는 문화 필요
- 일당 책정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일감이 없는 상황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려움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0개월까지만 일을 하도록 함
- 퇴직공제금 제도가 모든 현장에 적용되길 희망
- 출력일보에 기재할 때는 모두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적도록 업체 이름을 알려줌. 이는 3차 하청부터는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불법 하도급 문제를 표면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조사 나오기 전에 다 알고 있어요. 그 전에 현장에 개구부도 뚫려 있다든가, 안전 난간도 없다든가 하면 다 조치를 하는 거예요. 평소 하던 모습을 봐야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고 말을 할 텐데. 3~4일 전에 조사 나오니까 썩 치워. 준비해. 그러니까 9시부터 조사를 해서 잘 몰라요.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왜 그랬지? 그런 식이라”

“현장 분들이 제가 볼 때 반 이상은 아주 말씨가 불친절해요. 야, 저, 뭐 이 여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걸 각오하고 나왔죠 이미. 노가다 시장이 네네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어떨 때 보면 여후 올라 올 때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그러면 다그치는 거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인간 시장에서 팔려 나가는 거 같은, 노예제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인격 체계가 있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 취급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옛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요. 반장님들이라든가 소장급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요. ‘어이’. 다 반말.”

“사람 능력이 다 같지 않은데, 좀 잘하는 사람한테는 대우를 해주고, 일 못 하면 막 무시하고 막 하대하고 그런 게 있어요. 눈치껏 하면 챙겨줘요. 더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말도 못 하고, 일 못 하면 나도 저런 꼴 당할 텐데.”

“업자들은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려 하고 우리는 많이 받고 일을 적게 하려고 하고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15개(15만원) 가면 수월하겠구나 하지만 가 보면 아니에요. 15만원 주고 17만원짜리 일을 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17, 18개짜리 할 일을 15개짜리로 ‘뭘 청소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걸로 갔는데 곧방 시키지, 전문 배관하는 사람들이 타일 붙일 사람들이 할 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게 15개짜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와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한 번 나왔으면 끝까지 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 봐야 또 하루 데마찌(일 없이 대기하는 날) 나니까 하루 참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게 로터리 역할을 하는 인력 사무실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로터리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가표가 나오거든요. 단가표 대로 사람 보내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일 안 주잖아요.”

“퇴직금 안 주려고 1년은 절대로 안 시켜요. 10개월 되면 딱 잘라 버려요.”

“지금은 일이 없어서 그나마 무슨 일이든 보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싶다면 일주일 내내 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일을 못 할까봐 불편한 상황 있어도 얘기를 안 해요. 일하다 다치고 피나고 해도 얘기 안 해요. 찍혀서 ‘나오지 마’ 이런다고요. 그래서 다치면 자기만 손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나 노동부나 다 노동자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하지만 절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퇴직공제 그거나 해주면 좋겠어요. 일용직 퇴직금인데, 사람 쓰고 하면 세금 신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게 4천원씩. 하루 일한 퇴직금이니깐 그거나 다 넣어주면 좋겠어요. 퇴직금이니깐.”

“하나로 카드요. 따로 할 게 아니라 세금 낼 때 그 사람 썼으면 퇴직금 같이 돼서 찍는 거예요. 날 썼으면 다음에 이 사람 썼으니깐 세금 낼 때 4천원까지 적립을 시켜서 자동 적립되게 해주면, 2군 업체까지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넣는데 아닌 업체들이 많으니깐.”

“맨 처음에 일할 때는 이름 가르쳐 주고 이 회사로 써라. 거기서 안전모 지급하는 걸로 다 기록은 하되 하청의 하청 거기서 일은 하는 거죠. 지금 ○○에서 일하고 있는데, ○○ 업체, ** 업체. 제가 인테리어로 또 들어간 거거든요. 세 번째죠. ** 인테리어 소속이 되어 있어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도 원래 소속은 두 번째.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다 서류 상으로는 두 번째로 올라와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원청 하청, 하청에서도 두 단계 세 단계 더 내려오면 어디 적어야지 하면서 적으라고 한다고요,”

4) 외국인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인터뷰 내용

4-1)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외국인 노동자

※ 국가 별 통역사에 의한 통역 내용임

○ 대기업에서만 TBM 참여

“아주 큰 현장은 아침마다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이거 조심 저거 조심하고. 그런데 작은 데는 그런 게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는 누구도 궁금하지 않고 오늘 이걸 해야 하니까 해서 그냥 일해요.”

○ 안전시설, 작업중지권, 보호구 현황

- ‘작업중지권’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알아도 사용 못함

“현장에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이렇게 일해요.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도 못 해요.”

“현장마다 달라요. 절벽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잘 해 놓은 데도 있고, 가끔 그냥 끈으로 묶어 놓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요. 혹시 구멍 있고 이런 거면 나무 판 합판으로 그냥 덮어 놓았어요.”

“대형 건설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반장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거나 119에는 신고 못 하고요. 그냥 소리만 질러도 사람들이 오니까요. 작은 현장은 지붕 잡부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요. 지붕 작업을 할 때 묶어 놓을 데가 없어서 안전 벨트 같은 걸 어디에 해 놓을 수 없어서 많이 추락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모 써요. 항상”

“안전벨트 같은 것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게 무거우니까 관리자가 없을 때 벗어 놓고 할 때도 있어요. 위험한 데 있을 때는 꼭 하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라고 시킬 때는 몰래 몰래 벗어요.”

○ 현장에서 다친 경험, 다쳤을 때 처리방법

-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
-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 다쳤을 때 치료는커녕 임금체불 등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못함

“잠깐 상처 나고 이런 건 아무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이거(구급상자)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다 바로 해 주시긴 했는데요.”

“작은 걸로 뭐라고 하면 괜히 혼나요. 많이 안 다쳤으면 왜 왔어? 가라고 해요.”

“건설업에서 사무실 옆에 구급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이거 하나 때문에 언제 내려오고 언제 또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일 하고 말아요.”

“상처 나는 건 아무 것도 아닌 거 같고, 많이 아플 거 같으면 얘기를 해서 조치를 받기도 하는데, 약국 이런 건 약통 어디 있는지 몰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관계가 좋으면 필요하면 병원까지 가시는데, 혹시라도 좋지 않은 관계면 아예 혼날 수도 있고.”

“우리 친구 (개구부예) 빠졌어요. 많이 다쳤어요. 친구 그냥 집에 갔어요. 왜 집에 갔냐고? 그때 비자가 C3로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3개월짜리 90일, 그게 외국인들은 출국하게 할까 봐 그냥 갔어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공사마다 다르고요. 어떤 경우는 일은 중단되지만 일당은 그대로 주고 병원에서 치료해 주고.”

“어떤 친구가 넘어졌는데, 엉덩이가 다 파래졌대요. 멍이 너무 들어서, 그래도 일을 하고 갔어요. 그냥 그 정도로 괜찮겠지 하고 일을 하고. 지금 동생이 다쳤는데 20일만 월급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고 했어요.”

“노동자 신원에 따라서,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면 크게 관심 안 쓰고 그냥 보내고. 잠깐 치료해주고 관심 안 쓰고, 연락 안 하고. 신원이 중요.”

“불법 체류 신원이라서 본인도 두려워해서, 다시 연락 안 하고 공사현장에서도 그냥 연락 끊기고, 전화했는데도 (임금) 요구했을 때 연락 끊기고.”

“우리 똑같이 E9 노동자였는데, 다쳤는데, 본인만 병원비 40만원 내고, 다음에 일을 다시 보내지 않고 그만 뒀어요. 다치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한 번 산재 말만 꺼내면, 그래 해줄게, 그런데 일은 끝이에요.”

○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카자흐스탄에서는 고참이 신규자를 가르치고 수당을 받는 관행이 있음. 한국에도 이러한 안전 멘토-멘티 시스템이 있기를 희망
-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한다고 여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주위를 알아야 해요. 본인이 조심해야 해요. 어디서 뭐가 떨어지는지 잘 관찰을 하고 알고 있어야 해요. 물건이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주의를, 집중력이 가장 중요해요.”

“안전을 지키려면 보호구를 잘 입어야 하고, 정리 정돈을 잘 해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아요. 교육해주는 직원들은 그냥 그 시간에만 안내를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해요. 지나갈 자리가 없이 정리가 안 되는 현장이 많아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건설사는 선배가 젊은 사람 맡으면 월급에서 추가로 20~25%를 줘요. 그 사람들이 신입을 책임지면서 가르쳐야 해요. 젊은 사람들 새로 20대가 들어오면. 선배가 있으면 알려주고. 일반 공장에서도 이렇게 신입이 들어오면 맡아서 어느 기간 동안 일을 가르치면서, 월급 좀 더 주고 보너스 조금 주고. (한국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없는 게 아쉬워요.”

“위험한 것은 서로 서로 알려주는데 한국인 신입이 들어오면 이를 정도는 가르쳐 주는데 외국인인 30분만 가르쳐

주고 알아서 눈치껏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가시는 데가 많아요.“

○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외국인들 많은데, 주로 중국인들 많아요.“

“10층 이상 건물, 30층까지 갔을 때 대부분 노동자는 50%가 외국인 노동자고요. 팀장이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보이고, 대부분 50% 이상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있어요.“

“팀장이 중국이면 그 팀은 다 중국 사람이예요. 우리는 일할 때 중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 사람이랑 일 하는 게 나아요.“

○ 현장에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마찰이나 갈등

- 작업지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 항상 하던 대로 일을 함
- 한국인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여김
- 반장이나 관리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고 생각
- 욕설이 많아 견디기 힘들

“작업지시를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물어보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 못 알아들어봐도 그냥 똑같은 일이니깐 그냥 하고.“

“맨 처음에 소통이 안 됐을 때는 주변에 동료들이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 잘 아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걸로 작업을 하고. 아예 작업 수량 같은 걸 안내를, 메모를 써 놔요. 메모 써 놓으면 그 수량으로 작업을 하고. 아예 소통 안 되면 물어보지 않고 일만 집중 해요.“

“한국 사람들과는 마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앞서서 활동적으로 빠르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본인 혼자 하는 작업을 2명을 시켜서 해요. 한국인은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인데 불러서 ‘여기 와서 같이 해’ 라고 해요.“

“욕설이 많아서 견디기 쉽지 않아요. 이새끼 이런 식의.“

“한국인하고 신규로 똑같이 들어왔는데, 신입 한국인이 부탁이 있거나 하면 다 해주고 그런데 나는 불만이나 부탁이 있거나 말 하려고 하는데 내 말 듣지도 않고. 왜 그런 걸까? 생각해 봤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외국인들 어차피 못 알아 들으니까 한국 관리쪽에서 지쳐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통이 안 돼서 일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약이다 생각하고요.“

“인력사무소에서 소개 받으면 한국 사람들이 1등으로 나가고 다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외국인이 나가요. 한국인보다 먼저 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한 두 번 가면 안 뽑아요. 며칠 가야 해요. 일주일 이상

출석했을 때 이후에 소개를 받아요. 바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맨 처음에 일 나갔을 때 시작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13만원. 보통 일당이 15~25만원 정도. 꾸준히 다녔을 때 우리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하루 일당이. 한 시간당 2만원.”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안전교육증만 있으면 되고. 안전교육 이수증이 없어도 일을 해요. 잠깐 소개로 아는 사람 부르니까. 주말에 사람 없어요.”

“건설업 안 가면 이사(이사집센터)로 가요. 주말에 알바로 야간택배(상하차 작업) 많이 해요.”

○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은 대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나 작은 현장으로 갈 때는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감

“안전모, 안전화, 장갑 다 해주시는데, 큰 공사 아파트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고, 작은 원룸 할 때는 본인들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해요.”

“안전 교육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전모를 벗거나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안 되면 바로 오늘 일 그만하라고 해요.”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더라도 본인 안전화를 (개인이) 챙기는데, 계속 전문직으로 다니는 노동자들한테는 안전화를 지급해 주는 거 같아요.”

“안전화는 자기들 걸 써요. 거기 못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운동화도 되는데 못이 들어가서. 자기가 사야 해요.”

○ 안전보건 교육

- 대기업에서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알아듣지 못함
- 당일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교육 내용이 항상 비슷해서 효과가 없다고 느낌

“큰 데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교육 받고. 작은 데는 아예 없고. 작은 데 고용주들이 아예 태도가 관심도 없어요.”

“효과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 안전 교육을 잘 들으니까 그때 주의 사항도 머리 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디 가나 비슷해서 큰 효과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매일 똑같은 얘기라서.”

“교육은 한국말로 해서 조금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해를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월 하나?’ 그러고 말죠.”

“소통이 어려워서 못 알아 듣고, (한국말 할 수 있는) 동료를 통해서 안전 교육에 대해서 작게 작게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을 해주고.”

“안전 교육만 대충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중에 안전 교육을 안 해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사인만 받고.”

“예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어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게 있어서 한국말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공사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교육을 받잖아요. 안전 교육, 어느 정도 나이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알아듣는데, 젊은 사람들은 원 ‘말이지?’ 현장에서 아침마다 하는 것도 빨리 끝내고 빨리 가고 싶으니까 5분만에 빨리 빨리 얘기하고, 듣는 사람 듣고. 안 듣는 사람 안 듣고.“

○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바라는 사항

- 감독이 불시에 자주 있기를 희망
- 안전관련 교육이나 알림을 당일 작업의 사례 위주로 해주길 희망
- 현장에 마실 물이 비치되지 않아 힘들
-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작업 현장 근처에서 대소변을 해결할 수 밖에 없음

“출장 나오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요. 그런데 이런 건(정부나 지자체 감독) 갑자기 하고 자주 해주면 현장에서도 꾸준히 지켰을 텐데. 이게 나가기 전에 미리 말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다 준비를 해 놔요. 통보하고 나갈 때도 이거 위해서 준비가 있으니까 그나마 좋고.”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안전에 관련된 뉴스를 꼭 알려주면 좋겠어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걸 알려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원칙이나 매일 하는 거 똑 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만. 그날 다른 데는 이런 똑 같은 건데, 이런 거(사고 사례 중심) 때문에 다쳤으니까 조심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아예 안 하든가.”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 더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안전을 지켜야 하고 건설 현장에서 아빠가 안전해야지 아기도 안전해요.”

“물 안 줘요, (물 마시러) 어디 몰래 가야 하고 점심 때까지 참아야 하고 너무 더워요.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휴식시간 조금 있어요. 휴게공간 없어요.”

“조그만 현장에 화장실 하나 있고, 큰 거에도 하나 있고 똑같아 다. 그냥 볼 일 봐요. 20층 있으면 언제 내려와? 다 그래요. 30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1층 가서 볼 일 보는 건 아니고 현장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 안에서 볼 일 다 봐요.”

“현장 청소하는 작업하다가 열 받아서. (대·소변)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아예 (청소하러) 안 가요.”

○ 특수건강진단은 해 본 적 없음

“청력검사 같은 거 받아본 적 없어요. 건강검진 해본 적 없어요.”

“건강검진 이런 거 받아 본 적은 없어요. 친구가 다니는 건설업체에서는 아침마다 혈압을 재요. 높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요새 큰 데는 그런 게 생겼어요.”

“공장 있을 때 가끔 사람 왔어요. 본드 많아요. 놓고 사람이 붙이고 왔다 갔다 해요. 저녁에 다 봐요.”

4-2) 중국 동포 외국인 노동자

○ TBM은 모두 알고 있으며, 작업시작 전 안전정보 전달이 안전작업에 도움

- 위험성평가는 용어도 생소하고 직접 참여해 본 경험도 없음

“TBM 아침 조회 하는 거잖아. (위험성평가에 대한 질문에) 하긴 하죠. 비 와서 미끄러지니까 주의하라고 하고. 높은 데서 일하면 추락 주의하라고 하고.”

“사인은 안 해요.”

“큰 현장은 아침 조회를 하는데, 작은 현장은 아침에 얘기만 하고 안 해요. 자체가 없어요.”

“하는 게 도움이 되죠. 비 조금 왔으니까 전기 조심하고 그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해주면 일하는 사람은 아니까 다 조심해요. 전기줄 같고 안 떼고 오잖아요? 어느 때 와서 전기줄을 싹 잘라 버려요. 끌어오려면 위에 띄워 놓는 거예요, 땅에 놓으면 감전 되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띄우는 거죠. 안 되면 잘라 버려요.”

○ 작업중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김

“(작업중지권) 그건 하면 오야지한테 찔려요. 우리는 위험해도 빨리 하는 게 일이에요. 안전 잘 안 지켜요. 빨리 해야 오야지가 좋아하니까. 우리 팀은 남기잖아요 일 할 수 있게. 빨리 안 하면 지금은 팀이 많으니까 우리는 잘라버리고 다른 팀 일 잘하는 팀(더 빨리 하는 팀) 하니까.”

“여기 일이 끝나려면 몇 시간 더 해야 하는데 ‘무조건 끝나야 해’ 하면, 우리는 모든 걸 해야 하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죠.”

○ 위험상황이나 사고에 대한 직·간접 경험과 다쳤을 때 처리 방법

- 다치면 대부분 공상처리, 골절상 등 크게 다칠 경우만 산재처리

“이전에도 우리 친구가 사고 났는데, 철근에, 빨리 하라고 하니까 찔려서. 찔리면 또 묘한데 찔려요 철근은, 엉덩이 찔린 사람도 있고 통구멍 찔린 사람도 있고. 제일 위험한 건 철근이야.”

“데크판에서 제일 위험해요. 사람 넘어지면 데크판이 하얀 철판인데 엄청 다가워요. 반사 돼서 거기 기온 50도 이상 돼요.”

“우마(말비계)에서 사고 제일 많이 나요. 고향 동생이 우마에서 작업해서 가다가 떨어졌는데 일주일만에 죽었어요.”

“작은 회사 같은데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큰 회사 같은데는 보상이 많아요. 그리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보상을 적게 받아요. 떠들어야지, 싸움을 해야 받고.”

“(위험한 상황은) 우리 스스로 대처하면서 하죠. 안전 대충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마 놓고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파이프 몇 개 꼽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빨리 해야 하는데, 그게 안전이 되겠어요? 금방 하고 빨리 치워야 해요.”

“발목을 다쳤는데, (병원 진단서가) 한 2~3주 나왔다고 하면 그냥 쉬라고 하고 일당 주고. 다 공상처리야. 그렇게 넘어가는거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며칠 일당 주겠다 해서 내가 산재처리 하겠다, 본사 찾아가겠다 해서 산재처리 했어요. 살짝 맞았는데 끊어진지도 모르고 3일 일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사진 찍어봐라. 무조건 끊어졌다는 거야. 찍어 보니까 갈비 하나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진단서 받고 산재처리 했지.”

“저는 손톱이 기계에 끼어서 나갔어요. 엄청 아픈 거예요. 일을 못 나가겠다 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나와서 돌아다니면 일당 주겠다고 해서 싸매고 나갔죠. 그래도 눈치 보여서 일 해야돼요. 안 나가면 그 돈 못 벌잖아요”

“굵히고 조금 다치고 이런 건 말도 못하죠.”

“우리는 골절이나 이래야 산재로 되는줄 알지”

○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 한국에서의 ‘빨리빨리’ 문화가 모든 사고의 원인
- 하부 하청업자(오야지) 체계가 없어져야 빨리빨리 관습이 사라지고 임금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기

“한국에서는 빨리 빨리만 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진짜 우리 중국에서 일하는 거보다 10배는 힘들어요 한국이. 스페인 갔는데, 한국에서 하루 할 거 3~4일은 해요.”

“빨리 빨리 안 하면 사고 적게 나고 일도 잘하고,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을 위반해야 해요.”

“오야지(하청업자)가 없어져야 돼요.”

“오야지가 일을 받으면 이만한 일을 하루에 해야 할 거 이틀에 하면 돈을 못 버니까 빨리 빨리 시키는 거지.”

“안전하고 오야지가 제일 안 맞아요. 소장하고 매일 싸우는 게 많아요. 현장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일이 늦잖아요. 오야지는 일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일이 늦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게 하는 게 낫죠”

“오야지 없이 큰 회사에서 일당으로 해서. 일당도 회사에서 계획적으로 줘야 하는데, 돈이 걸쳐 걸쳐 내려보아 보니까 적어지는 거예요. 다 빠지니까. 30만원이 밑에 오면 20만원 되는 거예요. 걸치니까.”

“데크 같은 데는 합판 같은 거 깔면서 해야죠. 그런데 빨리 하라고 하면 오야지들은 그거 다 깔고 하려면 빨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안 하죠. 그렇게 안 깔고 하면 사고 많이 나죠. 저는 그래도 말 하든 말든 깔고 해요.”

“팔리는데? 합판 올려줘야 깔지. 합판 안 올려줘요. 그대로 해야 해요. 왜 안 올려주냐 하면 빨리 해야 하니까. 그거 깔 시간이면 일 더 하면 되니까. 발판을 안 줘서 깔지 못 하고 할 때도 많아요.”

“도면대로 해야 해요.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면 도면 따라 하는 거니까.”

“현장 돈 많은데 서초 빌라 짓는데 가 봤는데, 건물주가 돈이 많으면 빨리보다 잘 해달라고 해요. 돈도 잘 주고, 참도 좋은 거 가져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잘 하는 거를 원하지요 천천히.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그게 정상이지.”

“거기는 오야지가 없고, 건물주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오야지를 주면 또 그렇게 돼요. 또 빨리 빨리 하라고 하고. 사고 나고.”

“아파트 가서 공구리 치고 사진 찍어 봐요. 철근 붙어있는 게 몇 개 되나? 싹 떨어지고 없다고요. 8미터짜리 3개 밖에 안 묶는데, 양쪽 끝에 묶고 건물건들 하는데, 공구리 툭 치면 툭툭 끊어져 나가지. 붙어 있을 힘이 있어? 다 떨어져요.”

○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교육

- 작은 현장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
- 일용직 노동자는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
- 대기업에서만 있는 안전교육은 항상 같은 내용이 반복돼 대부분 집중하지 않으나 일부 사례 중심 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여김

“조그만 현장은 안전시설이 거의 없지. 주택 현장은 안전모도 없어요. 그냥 모자 쓰고 하지.”

“안전화는 주는 게 아니고 거의 본인이 챙겨서 가고. 우리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어떤 데는 주는데 어떤 데는 안 줘요. 오래 하는 아파트는 줘요. 작은 현장, 작은 빌라 같은 데는 안 주고.”

“1년은 잘 안 써요. 퇴직금 줘야 하니까 안 주려고. 1년 되기 전에 잘라요. 건설 현장 사람들 머리 좋아요. 퇴직금 타 먹을 때 되면 딱 잘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큰 현장은 우리는 계약할 때 안전교육 받아야 돼요. 첫날 가면. 교육에 영어 많으면 못 알아들어요. 한 10년 된 사람들이나 좀 알아듣지.”

“교육 효과가 있죠. 자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들어요. 근데 오래 해서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알죠.”

“늘상 똑같죠. 기본은 똑같으니까. 그때는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작은 현장은 교육 자체가 없어요. 사무실 자체도 없어요.”

○ 화장실, 휴게시설 사용의 문제점

“작은 현장은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이 얼마나 먼데 있는지. 화장실 가서 더위 먹어서 토하고 쓰러지고.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일 못하겠더라고요. 지하에서 일하면 힘들어요. 웬만하면 화장실 안 가려고 참고 하는데, 가려면 부지런히 가야 하잖아요. 막 더운데 땀 뻘뻘 나지, 갔다 와서 무슨 소금알인지 그거 먹으니까 토하고 어지럽고. 한참 누워

있으니까 나아졌어요.”

“작은 현장은 휴게실 자체가 없죠.”

“큰 현장은 휴게실이라고 뭐 해 놔는데 있어도 못 들어가요. 휴게실도 좀 멀잖아요. 밥 먹을 때 한 번씩 가봐요. 사람이 걸으면 힘들잖아요. 안 가게 돼요”

“일할 때는 바빠서 못 가고, 휴게실도 이동식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하면 저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한 군데다 해 놓으니까 멀어가지고”

○ 의사소통, 타 현장에서의 신분증 도용, H2 비자 거부 문제

“한국말은 영어, 일본어가 너무 많아서 심각해요. 한국분들이 저희 나라 말 안 쓰니까 그게 좀. 오래 해서 알아 듣긴 알아 듣는데, 그게 좀 속으로 안 좋지.”

“처음 왔을 때 힘들었어요. 99년도에 처음 한국 왔을 때 중국에서부터 아는 한국 분인데, 나한테 전화로 콘센트 박스를 교체하고 뭐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를 하도 써서, 그래서 가서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영어로 된) 뭐 가져오라고 하는데 뭔지 알아야 가져오지.”

“한국말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오함마라 그러거든요.”

“작년에 두 번째 신분증 신청을 하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작년 7월에 42대가리(근무일 수 42일)가 올라가서, 한 달에 42대가리리가 올라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일당쟁이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자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타리 다니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거든요. 신분증을 복사해서 줘야 해요. 회사에서 달라고 해요. 나 안 나갈 때 내 신분증을 써요.”

“내가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내 신분증을 다 써요. 큰 현장 작은 현장 다 그래요.” “큰 현장도 그래요. 그거 써 놓고 얼굴은 틀려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요. 신분증 사방에서 다 써요.”

“관급공사라고 H2 비자는 안 쓴다고 교육하는 사람이 그래요. 취업 비자인데 왜 안 되냐고? 나 가겠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해요. 교육도 다 받았어요. 일 시키대. 한 두 주 했는데 ‘사고만 내지 말라’고, ‘처리하기 힘들다’고 갈 때마다 그 말을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누가 사고 내고 싶어서 내느냐고요? 그래서 안 다니겠다고 하고 안 다녔어요.”

○ 팀 구성, 팀 내 한국인 현황, 일감을 구하는 경로

-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중국동포가 고향 지인 등으로 팀을 구성

“옛날부터 한국에 와 있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국 분들 소장이나 그런 분들 많이 알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주는 거죠. 그걸 보고 로타리라고 해요. 로타리 하면 팀장이잖아요. 팀장이면 밑에 직원들 10명씩 해놔야요? 중국 쪽에서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러면 소장은 팀장한테 1인당 24만원 25만원씩 줘요. 그러면 이 팀장이 차를 끌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우리한테는 20만원씩 현금으로 일당을 줘요. 나머지는 팀장이 자기가 먹는 거죠. 차로 데리고 가고 참 주고 일자리(주로 철근) 잡아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팀 아니고 직영으로 따라가면 최고 23~24만원까지 받고. 제일 적게 받는 게 현금 19만원.”

“팀장도 다 똑같이 일을 해요. 일 안 하면 안돼요. 다 아는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한국인은 있긴 있는데 적어요. 우리팀 열여섯 명 되는데 둘 밖에 없어요. 그분은 오야지 밑에 분이거나 팀장 밑에 분이예요.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예요.”

2.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

1) 인터뷰 일시, 장소, 대상, 참석자수

차수	월일	인터뷰 대상	인원수
1차	9/20	건설안전·보건관리자	5명
2차	9/22	건설안전·보건관리자	5명
3차	10/5	건설안전·보건관리자	6명
4차	10/20	건설안전·보건관리자	5명
계			21명

2) 인터뷰 주요 질의내용

- 인터뷰 대상자 일반 현황, 고용형태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의 차이점이나 제약 유무, 안전보건조치·활동·보호구 관련, 위험요인 대처 및 사고 처리 현황, 위험정보 전달 및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방식, 업무 환경, 애로사항 등

3)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 내용

3-1)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인터뷰 내용

○ 큰 현장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잘 갖춰져 있음

-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가능토록 현장 곳곳에 무료전화번호 비치
- 안전관리 인력 충분, 안전관리자 서류 과중부담 비교적 적음
- TBM 활동 시 작업 팀 별 위험성평가 실시
- 노동자 의견 개진은 늘어나는 추세, 노동자대표 통해 의견 수렴

“저희는 수신 전화가 있습니다. 080 무료 전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안전관리자를 보조해주는 보조원들이 있어요. 안전 순찰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분들을 파악하시는 분이 있고. 시설원들이 있는데, 시설원들은 시설물들이 빠져 있는 것들을 설치해주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급박한 경우가

있으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어요.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시스템도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유사시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서류야 예전부터 안전관리자는 이슈가 됐던 상황들인데, 그걸 좀 더 빠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대기업 현장은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혼자 있는 현장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서류도 하고 현장도 봐야 하니까 서류에 얽매이다 보면 현장을 놓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나눠서 하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TBM을 할 때 법적으로 해야 하는 위험성평가를 다 실시하고, 작업의 프로젝트 일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무엇을 조사해야 하고 어떤 안전 포인트가 있는 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줘서, 새로운 공정이 투입됐을 때 TBM 활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전체 다 모여서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가 끝나면 팀 별로 모여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평가 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고, 위험한 작업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위험한 작업을 하면 현장에서 별도로 다시 TBM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작업 별 팀장들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라고 말을 합니다. 방법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작업 팀장님이 실제로 위험성평가 작성된 걸 가지고 작업 팀원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전보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조금씩 커지고는 있는 거 같아요. 돌아다니면 잠깐 얘기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는 그런 노동자분들이 많아졌어요. ‘나 이거 불편한데’ 하고 개선이 되건 안 되건 일단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랑 공사 관리자, 안전관리자랑, 노동자 대표님이랑 회의석에 앉아서 이 작업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안전상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본인이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도 있고.”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사용기준이 없어 혼란 발생, 개선방안 마련 희망

“휴게 시설을 좀 갖출 수 있게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텐트는 되는데 들어가는 의자는 안 되고, 사실 그 말을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노동자에게 설명도 되게 어렵고 그분들이 듣기에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말이 되냐고? 어떻게 쉬라고 하느냐고?”

“근본적인 원인은 산안법 내에 산업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침을 안 내려요. 그러면서 된다 안된다가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청마다 다르고, 이거 예전에 됐었는데,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 거죠”

○ 스마트 안전장비는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짐

“저희가 24개 정도 시범운행 해봤어요. 그 중에 된 게 3~4개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적용시키기 힘든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따라가기에 아직도 데이터 값이나 이런 게 부족하죠.”

“기술이 안 되거나 비싼 경우가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보건관리자 업무 과중

- 단기간 유동인구가 많고 공정이 수시로 변하는 현장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제도 개선 필요
- 외국인 노동자는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고, 확인도 어려움
- 기특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문제 개선 필요

“작업환경측정은 반기에 해야 하고 도장작업 들어오면 중간에 수시로 하고, 꼭 해야 해요. 본사도 체크하고 그때 되면 문서가 날라 와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해서 날라고요. 그날 출근한 전 공정 거의 다 해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출근한 인원은 다 해요. 저희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다 해야 해요, 실제 작업 어디 가서 따로 서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그 작업 하고 있는 위치에 기기를 착용하고 가서 측정을 다 하는 겁니다.”

“특수건강검진은 3개월에 한 번씩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3개월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은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조업에 맞춰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결과지를 받았을 때 퇴사를 하신 분이 더 많아요. 제조는 일하시는 분들이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업은 매일 달라지는데 건강관리나 상담이나 모든 걸 관리하기가.”

“이게 어려운 게 뭐냐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진받은 사람의 결과를 6개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현장에서도, 이분이 같은 직종군이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 아니면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안 갖고 있으면 실갱이 하다가 교육하다가 가는 거예요.”

“외국인분들이 본인 명의 아닌 게 많아요. 조회하려면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조회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한 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팀이 왔잖아요. 6~7명 왔는데, 이 한 명 가라고 하면 주룩룩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안 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 공치는 거고..”

“정부 기관에서 그 직종에서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게끔 해서 그 비용은 지원을 해줘야겠죠. 투입될 수 있게 (현장에서) 확인만 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기초교육처럼 증을 갖고 다니는 거죠. 모바일로 해서”

“2,200억원 현장이면 보건관리자가 2명 있어야 하는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 명만 뒀도 되는 거예요. 막 시작하는 보건관리자분이, 보건관리자 혼자서 싸움이거든요. 보건관리자분들이 노동자분들에게 건강 상담도 해주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직종군인데.”

○ 외국인 노동자 소통문제 심각, 한국 젊은 층 유입방안 모색 필요

“외국인 노동자 너무 힘들긴 해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처우 개선을 해서. 주 5일 근무. 젊은 사람은 주 5일에 4대보험 되고 그게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아지면 젊은 사람들 돌아오지 않을까요? 젊은이들이”

○ 버려지는 보호구가 너무 많음

- 보호구 개인구매 시 보조금 지급, 퇴직공제부금 활용 방법 등을 제시

“신규자 교육할 때도 보호구 지급 관련해서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반장님들은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명확하게 요청을 하시고.”

“현장에 가면 안전모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 가면 다 쓰레기입니다. 다 폐기물입니다. 하루 쓰고 버리고 가시고..”

“자기 돈을 주고 안 샀잖아요. 지급을 받잖아요. 현장의 관리자로서 말씀드리면 쓰는 사람은 현장 끝나고 나면 탁 던지고 가버려요.”

“개인이 샀으면 해요. 그걸 개인이 사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건설노동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받으면 1년에 보통 안전화 하나 두 개 정도 쓰는 부분이니깐 어느 정도 금액을 나라에서 공제를 해주든지 보조를 해주든지 하면 좋을 거 같아요”

○ 안전보건교육, 현장 상황에 안 맞고 서류 상 교육 많아 실효성에 큰 문제

- 신규교육 후 혈압 높으면 채용 안함. 혈압 정상이면 안면인식 등록

- 건설현장,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사실상 실행 불가능

- 안전보건교육은 정부 주관 실시,페이백 등 교육비 지원 방안 희망

“저희는 신규 교육할 때 그거(건설안전보건기초교육 이수증) 없으면 안 되고요. 저희는 안면 인식도 하거든요. 교육을 받고 보건 쪽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 혈압이 높거나 하면 채용을 안 시키고 그게 다 되면 안면 등록을 해주는 거죠. 등록을 하면 들어올 때 이걸 찍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실은 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시간을 하려고 하면 정기교육도 공정 별로 다 따로 하는데 공정이 50개 되는데 2시간씩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시간 안 맞아서, 그 사람 모아서 해야 하고 시공사의 교육만 담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다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 교육만 했냐? 그거 아까 말한 것처럼 문서로 만들어서 교육받고 사인 서류 받은 거 다 붙이고 사진 만들어서 일주일이면 바인더 하나 이상은 기본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교육이 너무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일용 노동자분들이 많게는 현장을 1년에 몇 십 군데 이동하시는데 가는 데마다 신규채용자교육을 특별안전교육을 하면, 거기에 MSDS 교육도 받아야죠. 한 달 지나면 정기교육 받아야 하죠. 발주처에서 요구하면 그것도 해야 하죠. 기초안전보건교육도, 작업종사자 교육도 해야 하고 특고직

교육도 해야 하고, 중복되는 교육이잖아요.”

“서류 상에 보면 항상 교육이 7~9시 9~11시 1~3시 3~5시 이런 식으로 짝짝 차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누가 봐도 서류가 거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특별 교육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안전교육장은 9시부터 5시까지 짝짝 차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제도적으로 차라리 그 교육을 솔직히 정부 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기관이 정확하게 그 교육을 건설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받게끔 하고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한테 페이백을 해줘야죠. 일을 못 했으니까”

“제대로 하면 2시간 해야 하는데 소장 눈치 보여서 5분 안에 끝나고 가끔 TBM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직접 와서 해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해요”

○ 산재예방 활동의 장애물, 필요한 점

- 잦은 설계 변경은 안전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
- 노동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는 과실비용 적용 필요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지연의 경우 발주처나 정부에서 지원 희망

“저희 나라는 맨날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공사팀은 거기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설계 변경만 안 돼도 솔직히 시간 남거든요. 공사팀 바쁘니까 말 못 시키고 여유가 없는 거죠. 안전은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시간 남아 보세요. 가서 잡아 드리고 하는데 여유가 없으면 서로 못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변경이라면 돌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개인의 부주의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걸 교통사고처럼 책임소재를 어느 정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영국의 경우 노동자 과실비율 때문에 노동자에게 사고에 대한 보상이 100%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걸 좀 해야지 개인 보호구 착용도 더 철저하게 할 거 같아요.”

“환경적 재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라고 하면 솔직히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적어도 나라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공사 기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2) 8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자 인터뷰 내용

○ 위험성평가는 현장 작업자 참여 어려워 대부분 서류 증빙만 존재

- 위험성평가는 직반장들 위주로 실시돼야 하며, 별도 교육 필요

- 외국인과의 소통 어려움, 전반적인 외국인 전담 교육 필요

“위험성평가의 주 목적은 현장 사람들의 위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위험이 내재된 것을 발굴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각 공정 별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그걸 형식적으로도 안 해요.”

“최초에 위험성평가를 하면 담당 협력사들이 와서 같이 해야 하는데 협력사들도 위험성평가를 처음 들어보고 소장도 사장도 마찬가지로 직반장들도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참여를 안하고, 그리고 수시 위험성평가라는 건 공정이 변경될 때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참여를 안 해요”

“직반장부터가 귀찮아해요. 직반장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해야지. 자기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를 보면 현장에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참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일일 위험성평가를 하는 게 시공사도 본사가 있잖아요. 보여주기 식이에요. 다 본사에서 지시해서 현장에 하라고 하고, 본사에 보고는 해야 하고”

“위험성평가는 영국 거를 우리나라 그대로 해석해서 쓴 거예요. 위험성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걸로 접근을 해줘야 해요.”

“정부 차원에서도 건설업의 협력사에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좀 소장이라도 아니면 반장이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참여가 되지. 노동자들이 반장 말은 잘 듣거든요 현장에서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장도 잘 알아요.”

“개별적으로 해서 툭박스미팅을 하라고 하면 그때는 잘해요. 며칠 마이크 안 잡으면 가버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이 오늘 왔던 사람이 내일 안 와. 내일 왔던 사람이 보면 하루에 안전 교육을 소규모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바뀌어”

“골조 특히 철근 그런 건 거의 외국 사람이 많거든요. 소통을 관리감독자들이 주도를 해야지 안전관리자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작업 지시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외국 노동자하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전관리자로서는 찾아야 하고 만들어야 하고 외국인하고 문화하고 인종 언어 관습 이런 게 달라서 소통이 매우 힘들어요. 시청각 교육만 아니고 현장에 내려와서 외국인을 훈련시켜서 그 외국인 현장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 이후, 사고 위험성 크게 상승

- 현장에서는 작업중지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뭐냐면 작업중지를 때린다는 거죠. 이게 큰 거예요. 작업중지가 보통 한 달 정도인데 지연되면 한 달 만회하기 위해서 또 위험한 상황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리 포지션이 넓어지는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도가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 중소규모 현장은 작업중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작업중지권 적용이 어려운 실정

“일단 공사 쪽에서는 작업중지 그게 안 되죠. 일을 하고 수정하라는 거죠. 일단 정지하고 보강하자. 다 내려오세요 하면 난리 나는 거죠. ‘뭘 내려와? 일 하면서 보강해.’ 꽤 많죠. 밑에서 작업하는데, 위에서 또 작업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저희가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면 집에서 놀게 된다니까”

“작업 중지하고 집에 가죠, 중지하고 가요.”

“집에 가고 싶을 때 작업 중지하고 가요.”

“작업 중단한 거까지 좋은데, 이 작업 중단한 거에 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단순히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못 한 거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여러 가지 것들을 원도급사가 책임져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도는 있지만 현실에서 현장 소장이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의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가중
- 원청사 별 협력업체에 배정하는 안전관리비 기준이 다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 보장을 위해 하도급 안전관리비 요율제 제도화 필요
-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 임금을 제외하면 안전시설, 보호구에 사용할 비용이 없음
- 현장 소장이 안전관리비 사용을 제한해 이윤으로 남기려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법적으로 과태료가 적게 부과되기 때문이라 여김
- 소장이 안전관리비를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 필요

“안전관리자도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환경 자체가 법적으로는 더 사람을 투입시켜야 하는데 예전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물론 요율은 조금씩 변동되고 있지만.”

“그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그걸 쓰라고만 했지. 막상 쓸려고 하면 노동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데 썼어요 하면서 과태료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서.”

“휴게시설을 운영하려면 에어컨을 넣는 거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영을 하는데 전기료는 안 된다. 전기를 써야지 가동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이걸 가니까 안전관리자도 헛갈리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맨날 질의하다가 끝나요”

“진짜 웃긴 게 뭐냐 하면 계단은 공사 금액이예요. 공사에서 난간대는 안전이예요. 계단을 만드는 사람이 안전난간대를 못 해요. 안전난간은 따로 해야하니 애매한 거예요. 난간 하나 만드는 것도 계단 하나 만드는 것도 따로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잡혔을 때 이렇게 예산을 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걸 함께 금액을 잡아줘야 합니다.”

“민간공사는 법적으로 요율을 원청사가 그 하도급사의 안전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2% 줘야 하는데, 0.3% 1% 아예 안 줘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써도 다른 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안전 보호구도 지급을 해줘야 하고 시설도 해야 하는데, 인건비 쓰다 보면 모자라는 거죠.”

“처음에 안전관리비 계산을 했을 때 원청에서 계산을 하는 건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협력업체가 하는 건 원청에서 정해서 나가요. 협력업체에 대한 요율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비 요율 법적으로 규정해주면 좋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털라고 하는데 요율은 안 올랐으니깐 비용이 작아요. 우리 임금은 올라갔어요, 나머지 안전시설이랑 용품, 보호구를 사야 하는데 이게 턱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담 안 하려고 해요”

“저희 관리비가 1억 조금 넘는데 인건비 빼버리면 4,400만원 그걸로 다 쳐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끼고 하면 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아끼면 아낄수록 소장은 좋아하죠. 안전화 찢어졌는데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사람들 안전모나 안전벨트 줘요. 불만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현재 제도 상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쉽게 향상되긴 어려울 거예요. 인건비 반영 비율이라도 낮춰줬으면 현 제도 상에서 그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늘 수 있잖아요. 안전시설비라든가 안전보호구 이런 데 구매할 비용이 좀 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공사비를 어차피 중간에 (갱신을) 한 번씩 하거든요. 조금 더 증액을 한다든가 일단 원청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전관리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어찌 됐든 공사비를 조금 넘기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현장은 원래 안 하는 데도 사실 많아요.”

“현장 소장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사에서 이익을 남겨야지 본사에서 인정도 받고 본인들도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비 사용을 억제해요.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입을 시켜야 안전이 확보가 된다고 판단해서 투입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안전관리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장 소장님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집행을 못 하게 하는데, 안전관리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냐요?”

“안전보건관리비가 1억8천 됐는데, 현장 소장님과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안전관리자 두 분이 나가시고 관두신 거예요. 돈을 사용을 못 하게 하나니까요. 결론은 그 돈 중에서 2천5백만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안 쓴 만큼 이윤으로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현장 소장이 굉장히 저거 하더라고요”

“공정률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이 있어요. 가장 많은 과태료가 6백만원밖에 안 돼요. 제가 2천5백만원 남겼는데, 만약에 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50% 이상 안 썼어요. 그러면 6백만원 내고 나머지 1억 8천 중에서 몇 천을 남겨도 이익이잖아요. 제도적 허점이잖아요.”

“소장이 요즘에도 안전관리비를 이상하게 유용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안전관리비 안전화 예를 들어서 8만원짜리 12만원 올려서 자기가 술 먹으려고 안 들어온 것도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야 할 거 같고”

○ 안전관리자의 과중한 서류 업무

- 서류 작성을 위해 야근은 물론 퇴근 후 집에서도 작업
-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비한 안전활동 근거서류 마련에도 많은 시간 허비
- 정부 감독 부처 간 안전관련 요구서류 양식 통일, 표준화 필요
- 증처법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서류 업무는 늘어남

“2달 동안 10시에 퇴근했거든요. 원청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많을 뿐더러 감시단에서 올리는 사진도 많아서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서류하고 있으면 왜 현장 안 나가? 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조건 나가야 해요 그러면 서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남들 다 보내고 저한테 전화 안 오고 할 때 하는 거죠”

“서류만 주구장창 퇴근해서도 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뭘 그리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살아야 해요. 문서에 매달리지 않고, 지도 및 조언 10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고”

“발주처, 국토부 산하에 있는 발주처는 1년에 점검을 수십 번 나옵니다. 현장에 5명 있는데 점검 나오시는 분이 열 몇 명 나와요”

“우리는 사전 예방에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록물이라는 건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대처를 위한 방안의 수단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물을 자주 많이 만들게 되어 있고.”

“물론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그런 안전보건조치. 특히 추락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든요. 지도·조언 보좌했다는 걸 넘겨야 하니까, 쉽게 말해서 현장 소장한테 몇 일 날 추락 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분명히 얘기했다. 말로만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서류 작업을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간에 넘겨 놔야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일반 법정 서류를 넘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요. 고의로 업무적으로 일을 안 했다. 과실치사로 계속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야 해요. 본인을 위해서”

“서류가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먹여요. 현장이 안전조치 안 되어 있다고 과태료를 먹여야 하는데 현장은 자주 안 오고 가끔 와서 서류를 두드려 패면, 안전관리자들이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안전 서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기관에서 정확한 양식과 정확한 작성 방법을 줘서 그것만 하게끔, 자주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독 기관들이 또 요구를 해요. 뭔가 자기들도 해 놓은 걸 해야 하니까.”

“정부 감독 부처간 서류를 통일하고 안전관리자 본연의 업무가 서류가 아니고 현장을 관리하는 거라고,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 한가 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서류만 퇴근해서도 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1~2년 만에 관심을 올리는 분기점은 되는 거 같아요. 사업주가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한 관심도 없었는데 말 그대로 이만큼은 생겼다 생각합니다.”

“사실 중처법은 로펌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지 현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처법 적용한다고 해도 현장에 다치는 사람 없잖아요. 중처법은 로펌이라든가 그런 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처법은 어차피 노동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안전관리자들이 중처법 때문에 이게 결국 문서거든요. 현장도 많이 못 나가요. 접촉을 단절시켜요. 현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죽여요. 중처법 때문에”

○ 불법 재하도급, 최저가 입찰제 문제는 안전 확보에 큰 악영향

“지금 건설현장 실정이 어떠냐 하면 다단계 하청입니다. 이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안전을 강요하고 교육을 시키면 자기네들 나자빠질 거예요. 이윤이 없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다단계의 불법 하청 고리를 끊어야지 이게 가능할 겁니다”

“안전교육을 하는 시간조차 저희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그 돈도 아까운 거예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 형틀 목공 하시는 분들이 25만원을 받는데, 교육을 하려면 법적으로 2시간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동하고 이러면 3시간을 뺀단 말이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3시간 한 걸 그냥 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안 했어? 그러면 니네 과태료 맞아.’ 정확한 금액을 주고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교육도 문제가 뭐냐 하면요. 처음에 이제 신규 교육을 간단히 하고 특별안전교육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정 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장비 27종인가 하고 분진이나 용접자들은 특별안전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걸 매일 2시간 이상 시켜야 하는데, 원래는 이게 협력사들이 해서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그걸 안 줘요. 하라고 하면 그걸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다리를 사용할 때 2인1조로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거의 90%가 불법 하도급이 존재하는 산업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2명이나 인력을 낭비해서 하려고 할까요? 그 작업에? 불법 하도급이 많아서 실제 실행하는 소장들에게는 적은 이윤을 남게 하기 때문에 사다리 작업할 때 2명 투입하면 적자라고요. 적자인데 누가 하겠냐고요? 이 구조부터 끊어야만이 안전관리가 바로 살 것”

“비용이 들어가야지 안전해지는데 이윤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수주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불법 하도급 이걸 바로 잡으면 사고가 확 줄 거예요.”

“최저 입찰제 그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공사비가. 최저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최저 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가장 문제는 최저 입찰제 그게 문제예요. 안전관리비 안 쓰려고 합니다”

○ 산재의 원인,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 불안정한 행동에 의한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게 과실비율 적용, 패널티를 부과해야 함

- 산업법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 관련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리감독자와 협조가 되지 않음
- 불안전상태·행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고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현장 소장,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 지원 및 책임 부여 필요

“안전고리에 안 매고 안전모 착용을 안 해도 보상 다 해줄게 노동자에게 과실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책임은 누구한테 묻느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한 사람한테는 패널티를 바로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이분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안전조치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지만 이분들이 위험한 곳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험하다 싶으면 안전모 쓰면 되는 거고 위험하다 싶으면 안전벨트 하면 되는 거고, 알면서도 안 해요”

“여기는 안전벨트를 차라고 줘도 다 버리고 다녀요. 작업자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나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 전혀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사고가 안 나지”

“아무 패널티가 없어요. 사고 났을 때 앞으로 5%나 10%는 보상비에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손해 나는 게 있어야 본인이 움직이는데 자기한테 손해 가는 건 없고 안전관리자 책임지고 현장 소장 책임지고 과태료 먹이고 이거는 원인과 결과의 해결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대기업) 현장에서 엄청 잘해요 왜? 원 아웃 투 아웃 쓰리 아웃도 잘 안 봐요 처음에 원 아웃 났을 때는 3일 출력 정지입니다. 일당을 못 벌러 오니까 바로 말 들어요. 세 번 걸리면 퇴출되니까 두 번 걸리고 나서 조심합니다. 안전관리가 잘되는 현장을 보면 패널티가 분명히 존재해요. 노조도 크게 관여를 못해요. 왜냐하며 이미 그런 문화가 잡혀 있어요.”

“관리감독자에게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자한테는 책임을 안 물어요. 안전관리자한테는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감독자는 안전 업무를 안 해요. ‘나는 뭐 이거 품질 봐야 하는데’ 산업법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리감독자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직무 보시면 시행령 15조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위의 지도에 대한 협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도 과태료가 없고 패널티가 없어요. ‘안전이니까 니가 해야지.’ 이런 분위기니까 미협조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드러나야 할 거 같아요.”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일이 우선이지 교육이나 이런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현장에 많고 사고는 날 수밖에 없고요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해요.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를 잘 안 따라와 줘요.”

“안전모 안 쓰고 현장을 돌아다녀요. 높은 데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고리 안 했어요. 내가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 노동부 앱 통해서 직접 전담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경찰들이 음주 단속 할 때처럼 단속당한 사람이 결국 잘못인게 드러나니까”

“(앱을 통해) 신고 시 이 노동자에게 5만원, 사용자 사업주에게 5만원 과태료 먹이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해요.

이런 식으로 5개 10개가 쌓여야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지. 이렇게 즉시 조치가 드러나는 앱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적인 사람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

“CCTV 타워는 줌도 가능하고 360도 회전이 다 됐는데, 그게 엄청나게 좋아. 뭐가 좋냐 하면 사고 난 것도 다 잡아내고 도둑놈도 다 잡아내, 나중에 뭘 일 발생했을 때 다 찾아내요. 이 사람 어떻게 다쳤는지 왜 다쳤는지 다 찾아내요.”

“안전관리자의 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소장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너네들 처벌받지 않으려면 바로 하라고 그렇게 불이익도 주고 그런 압박감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개선을 하지”

“소장님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2년마다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해요”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데도 과태료가 적어 의도적으로 선임하지 않는 현장이 많음

“안전관리자 미선임에도 내버려 두는 현장이 있어요 이런 게 발견되면 미선임으로 해서 보통 500만원을 때려요. 미선임 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동일하게 500 정도 때리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이 미선임한 채로 두냐 하면, 네 달 동안 채용하면 1,600인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월급이랑 동일하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관리자 고용도 더 되고 안전도 더 되고 법도 지키는데 이 과태료가 터무니 없이 적어요.”

○ 개인보호구 쓰레기가 넘쳐남. 퇴직공제나 바우처 활용 등 대책 필요

“○○마켓(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들어가서 안전화 두드려 보시면 얼마나 많은 안전화가 나오고, 어디 가보면 안전벨트가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는지 보시면 돈이 얼마나 쓸데 없는데 새는지. 실제적인 안전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개인 보호구 팔아 먹고..”

“오늘 하고 내일 받아 가고 다른 현장 가서 또 줘야 해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해. 법적으로. 또 받아서 쟁여 놓고. 이 사람들이 꾸준히 나오면 관리가 쉬워요. 하루 나왔다 안 오고 이틀 나왔다 안 오고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현장 가서 받고 저 현장 가서 또 받고, 안전화도 얘기 잘 하면 마음에 들면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 또 타고”

“모자 같은 것도 현장 가면 버리고 가. 모자 해 봐야 5천원에서 만원 하잖아요. 좋아 봐야, 신발도 마찬가지로 본인 신발 본인이 맞는 거 신고 와서 제대로 해서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이런 것도 더 잘하고 안전에 신경 쓰지”

“안전장비들을 너무 쉽게 몇 번 쓰다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려요. 현장에, 주워다가 다시 쓰라고 하면 냄새 난다고 안 써요, 자기 거 아니라고 안 쓰고.”

“안전모 안전화 벨트 이 정도는 자기가 작업을 위해서는 연장도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해요. 이거는 좀 현장에 들고와야 한다 생각해요.”

“노동자 퇴직공제 찌고 가잖아요. 정부 전산이랑 연결되잖아요. 몇 개월 이상 되면 정부가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상적인 거죠. 바우처 그런 거 하는 식으로.”

○ 작업환경측정은 대부분 형식적이며 노출기준 이하로 조정, 특수건강검진은 정부 재정지원사업(디딤돌 사업) 이외는 자체 비용 부담 힘든 실정

“작업환경측정은 반기에 한 번씩 다 하죠. 업체 부르면 측정기 착용하고 정상으로 잘 나오던데?”

“법적인 부분만 딱 서류 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분한테 시료 채취해서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그것도 이제는 용역 업체에서 돈 벌려고 은퇴하시는 분들 업체 차려서”

“그리고 이게 6개월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원래 법에서는 새로운 유해 물질이 있으면 그때 그때 다 해야 하는 건데 어렵다는 거죠. 건설은 무조건 해야 해요 먼지만 발생해도 먼지 자체가 분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 명 나오고 두 명 나오는데”

“막말로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가 불리한데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쪽한테 어떻게 좀 안 되냐? 관계가 괜찮다 하면 노출 허용기준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특수건강검진 올해 끝났지만 올해 70%까지 보장을 해줬어요. 작년에 100% 였는데 100% 해줘야 해요. 아니면 솔직하게 특수건강검진 자체가 안전관리비에서 나가는데 한 명 5만원 꼴인데 감당이 안 돼요.”

“디딤돌 사업이 공기 초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 있는데 너무 짧아요 기간이. 빨리 해 봤자 3월 4월에 시작해서 8월 9월에 끝나요. 그게 빨리 소진되잖아요 나머지 기간은 사비로 하는 거예요.”

○ 현장 내 안전관리자로서의 어려움, 희망사항

- 공사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해짐
- 안전관리자에게 공정 변경 상황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정 별 안전관리에 어려움 발생
- 실질적인 독립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자 권한 강화 방안 필요
- 산재 발생 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희망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무시하고 공사 업무 아무거나 시켜요. 청소고 뭐고. 타워크레인 일 조정도 시키고, 오만 걸 다 시킨다고요.”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먼저 현장에서는 청소도 하고 자재 파이프 나르는 것도 하고, 지게차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전활동을 전혀 할 수 없죠, 이거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서류를 어떻게 해요? 지게차 한 두 시간 쓰는 게 기본인데”

“땅을 파면 토사를 반출해야 해요. 그러면 보통 관리자가 나와서 발주 차량 사진을 찍어야 해요. 내가 나갈 때마다 사진 찍는 거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가 지게차가 움직인다 하면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는지,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저희가 해 버리는거죠. 그러면 현장을 못 가는 거예요. 신호도 봐 주고 물건도 정비해주고 하는데

그걸 당연히 여겨요. 소장들이랑 직영 반장들이 당연히 여겨.”

“제일 중요한 게 안전관리자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서류 하기도 바쁜데 공무일 떠안지 공사일 떠안지 해줄 수는 있어요 청소 해줄 수 있어. 근데 안전관리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공정이 바뀌게 되면 작업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작업 내용이 달라지면 안전관리 내용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아무 내용도 못 들었는데, 내려가 보면 지게차로 파이프 기다란 걸 자기네끼리 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그걸 모르고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 말도 없이 다른 공정이 들어온다거나 작은 현장은, 대부분 안 좋게 얘기하면 강짜 부리듯이 일하시는 분이 많고요”

“안전관리를 하려고 해도 소장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하려면 조직의 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를 하급 부하를 다루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안전이 힘이 약해요, 센 거 같지만 힘이 약해요. 공무원한테 쥐어 터지고 소장한테 쥐어 터지고 작업자한테 쥐어 터지고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조직표를 살펴보면 소장님이 있고 공무 있고, 저희는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일은 소장님한테 지도 조언을 하는 일이거든요. 막상 지도 조언을 했다가는 소장님 난리가 나는 거죠. ‘니가 뭔데? 이 현장은 내가 왕’이라고. 제대로 되려면 안전관리자가 회사 조직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소장도 자기 밑에 직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에 둔다든지 조금 조절을 한다면 소장도 함부로 못 할 거 같아요. 함부로 못 하면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노동자들 안전을 더 신경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사고가 줄 수 있겠죠.”

“정부나 이런 관계기관, 산안법에 바라는 건 안전관리자들이 사업주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야 해요.”

“안전관리자들 사실 최선을 다했는데 어떨 때는 말 잘못해서 법적 구속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들도 변호사를 건설협회든 이쪽에서 안전관리자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

○ 기타 안전관리자로서 느끼는 현장의 문제점, 개선방안

- 현장 인력 고령화 심각, 젊은 층 유입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허위로 산재처리 요구하는 노동자 색출방안 마련 필요
-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도 보수교육 필요
- 기초안전보건증을 위조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으므로 개선 필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건설업계 고령화는 현실이니까. 나이 제한을 안 뒤서 넣긴 했는데, 70세 넘어가는 사람 보면 불안해요, 그걸 떠나서 그 중에 정정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60세 후반 중에, 맨날 소견서 건강검진 내놓으라고 하니까 짜증난다고 해요. 연령 제한을 늘려 줄 수 없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건설현장에 올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설현장에서 15만원 주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해서 5만원을 더 준다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힘들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페이가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용공 중국동포 참 많죠. 2인1조로 아침에 나타나 한 명은 증인, 한 명은 아야. 병원 가면 2주 진단이 나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를 한 두 번 해보면 아니까 병원 진료 허리를 다쳤다든지 앞에 기록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공사처리를 요구하고 뒷돈 챙기고 그 다음 날 다른 현장에 투입되고 돈을 받고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경우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해주면.”

“브로커들 꺼서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산재, 난청 환자들, 노무사 꺼서 우리 현장에 며칠 왔다 갔는데 다른 데서 난청 병을 앓고 와서, 마지막 현장으로 (산재처리나 공사처리를 요구). 건설 현장에 잠깐 잠깐 오신 분들 다 해줘야 하니까 금액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증 3년마다 기한을 정해서 다시 한 번 동영상을 보면서 상기시키고 자기 초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그걸 중국 노동자들이 가라로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옛날에 안전보건증이 H2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차원에서 이걸 새로운 걸로 바꿔야 합니다. 바뀌어지만 한 번 했다 하더라도 두 번은 못 하거든요. 10년 20년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조가 너무 활기치기 때문에 해마다 바꾸든지”

3. 건설안전·보건 전문가 인터뷰

1) 인터뷰 일시, 장소, 대상, 참석자수

차수	월일	인터뷰 대상	인원수
1차	6/15	건설안전·보건 전문가	8명
2차	6/27	건설안전·보건 전문가	6명
3차	11/10	건설안전·보건 전문가	3명
계			17명

2) 인터뷰 주요 질의내용

- 1, 2차 인터뷰는 주로 모니터링 추진방향에 대한 조언, 현재의 건설안전·보건의 현황과 문제점 위주, 3차 인터뷰는 일용직 노동자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그간의 인터뷰 내용 리뷰와 이와 관련한 전문가적 대책 등에 대한 자율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

3) 건설안전·보건 전문가 인터뷰 내용

○ 설계단계부터 안전이 확보되는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제도 보완 필요

- 설계안전성검토(DFS)가 일반공사, 민간공사까지 확대돼야 함
- 산안법 상 안전보건대장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프라가 구축돼야 함
- 설계단계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공기 산정, 보장 필요

“안전 관련된 분들이 설계회사에 근무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면이 그냥 나오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안 된 채. 설계회사에도 안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설계 당시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건설기술진흥법에 DFS라고 해서 설계안전성검토라는 법이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을 하게끔 만드는 법인데,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과 발주청 그러니까 공기업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공사 부분은 대상이 안 돼요. 민간까지 다 확대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사고라는 게 소규모에서 많이 나잖아요. 모든 공사에서 설계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비슷한 안전보건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비슷하게 연계돼서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만들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설계가 되고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발주를 하게 되면 단계가 있습니다. 입찰이 나가죠. 먼저 설계 입찰을 합니다. 용역사가 붙죠. 그 다음에 기본 실시 설계가 확정이 되죠. 시행사를 입찰합니다. 공사 금액이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원청사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 단계는 감리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입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중간 중간 단계에 필딩 하는 자문회의,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권 톨 안에 과연 안전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DFS를 하건 안전보건대장을 하건 또 다른 심의를 하건 누가 거기에서 기존의 설계단계 안전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건설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비용입니다. 적정공사기간이라는 게 요즘 공공 발주기관에서 적정공사안전위원회를 만들고 있죠. 거기에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겨 사고가 안 나게 하는 표준공기를 어떻게 제시 할 수 있느냐? 그게 선행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제하면 안전관리에 사용할 금액이 모자람
- 재해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도면’ 제작, 공정 별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추산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공공기관 토목 같은 공사는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에 따라서 5년 사업이 7년, 8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급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측정했다면 5년 정도 들어가 있을 건데 7년 8년 간다면 급여를 빼고 나면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단계부터 안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안전 도면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전 도면을 베이스로 해서 건설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안전시설이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가 되고,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안전 도면도 시공 도면처럼 초기에 세팅이 된다면 큰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처벌 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안전 도면도 초기에 세팅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감리제도 실효성 제고돼야

- 민간 공사는 감독 소홀, 비상주로 진행됨에 따라 효과가 떨어짐
- 안전 감리는 반드시 산업안전 전문가가 맡아야 함

“안전감리제도가 있어요. 공공기관도 민간도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 감독이 허술합니다. 감독의 의미는 주감독, 보조감독, 안전감리가 있는데, 공공발주에 있는 감리 분들은 발주자하고 감독에서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따져요. 업무를 허투루 못 해요, 민간 감리는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다 같은 식구다 보니까 제대로 감독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민간공사 감독, 감리를 공공 감리와 같은 체계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고들이 민간에서 발생하는 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감독, 감리 부재·소홀 같은.”

“감리가 비상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지금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업체들 기술 재해예방 이런 것도 한 달에 두 번 왔다고 현장에 안전관리가 정착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감리도 비상주다 보니까 와서 현장 한 번 둘러보고 이상 없으면 그냥 사인만 하고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시공 감리와 안전 감리가 따로 있거든요. 안전감리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출신, 산안법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죠. 국토부하고 노동부 제도가 달라요. 이제까지 국토부에서 감리 감독을 했는데, 안전 분야는 실제로 산업안전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국토부 쪽은 원래 시설적인 구조물 문제 구조 안전성, 장비 안전성 이런 건데, 산안법은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사람이 중심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도는 사람 중심이 아닌 이쪽(시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전문가다 보니까 이결(사람)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 건설현장 92%는 50억원 미만 현장

- 50억원 미만 현장은 산재예방 활동이 가장 절실하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등 제도권 밖에 위치

“120억 이상을 대형 공사 현장이라 말하거든요. 그게 100개 중에 2개예요. 나머지 98개는 120억 미만이에요, 거기에 50억 미만은 92개, 5억 미만 3억 미만이 60개예요. 대부분 위(대기업)를 보면 이런 안전 관련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죠. 그러나 사고사망이나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에 가장 절실한 부분은 50억원 미만이에요. 50억원 미만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법 제도권 밖에 있거든요”

○ 불법 재하도급이 5단계까지 내려가는 실정, 원청사 직접 시공 필요

-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면 사고율도 감소할 것
- 노동자는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서류상으로만 완벽
- 오더만 따서 넘겨주는 전문 업체, 부금소장 등 불법 성행

“작업자들이 과연 어디 어떤 소속이나? 실제 건설은 99.9%다 불법 하도급이에요. 원청에서 전문한테 가죠. 정상이에요. 전문부터 시작해서 5단계가 내려가요. 철근팀이라 하면 철근 시공 팀장한테 먼저 줘요. 불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이나 하면 외국인 동남아인들까지 해서 5단계가 내려갑니다. 계속 사고 나는 게 외국인들 많이 다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국토부도 불법 하도급 잡겠다 했는데 받은 사람 준 사람 전부 처벌이니까 이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실제 노동자들이 당신은 과연 어디 소속이나? 물론 서류 상에서는 완벽해요. 원청에서 직접 돈을 통장으로 싸주는 거니까, 그 통장에 싸주는 것도 팀장이나 이분들이 인증서를 갖고 있어서 그 돈을 빼서 작업자한테 현금으로 줘요. 5단계 간다 3단계 간다 그러면 건설에서 사고 나는 건 공기, 공사비, 불법 하도급인데 결국 그분들이 안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해야 하는 거니까”

“불법 하도급이 발견이 안 되는 게, 계약할 때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이 돼요. 계약이 되면 현장 소장이나 일하시는 분들 같이 와서 현장에 인사를 하고, 명함을 똑같이 파고 들어와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원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 재하도급이 들어가면 단가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고율도 떨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도에 재하도급만 해도 실제 공사비가 50%가 되는 거예요. 안전은 무시인 거지. 불법 재하도를 막으려면 원청사가 직접 시공해야죠. 지역에 있는 중견 업체들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오더를 입찰을 받아. 입찰 참가하는 업체 따로 있고 시공만 하는 업체 따로 있어요. 입찰 참가해서 떼어주는 거죠. 받은 걸 또 나눠주고. 15%만 먹어도 되는 거야. 공사 아무것도 안 하고. 애가 또 15% 먹고 넘기는 거고. 나중에 전체 금액의 50%를 가지고 시공할 수 밖에 없는. 원청에서 일괄 시공을 해야 하는 거죠. 또 부금소장이라고 있어요. 오더 따는. 회사 이사라고 명함 해놓고 하도를 받는 거예요. 조직도 상으로는 그 회사 소속인데 프리랜서처럼 이 회사에서 조금 받고 이 회사에서 조금 받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법이 자행된다고요.”

○ 건설 노동자 ‘건강관리수첩’ 제도 도입, 특수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필요

“현장에서 목수라고 하면 소음 분진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는데, 중소규모 현장에서 목수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도 채 안 될 거예요.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배치 전 검진받고. 배치 후는 이미 없어요 그 현장에. 건설 업종은 개인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수첩’으로 해서, 아니면 ‘건설관리수첩’으로 명명을 해서 개인들이 수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목수는 계속 목수만 하지 다른 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음 분진 받고 배치 전 받고 기간 지나서 배치 후 받고 정기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배치 전 검진을 받으면 목수는 1년에 많이 받으면 10번도 받아야 할 걸요? 수요자 중심에서 불편함이 뭐가 있는가 살펴 봐서 현재 법하고 타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법 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증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요. 받았나 안 받았나, 생년월일, 이름하고 조회하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를 허용한다면 이름하고 생년월일 치면 이 사람이 특수검진을 언제 받았구나, 우리 사업장에서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 줄어든 거 같아요. 건강관리수첩이 도입되면 자동으로 될 거 같고.”

○ 사고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기간’ 공기보장 방안 마련 필요

- 작업중지 기간만큼 공사 기간이 짧아져 이 기간을 채우려 무리한 작업을 강행,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결과 초래

“사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을 나와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작업을 중지시키게 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현장이나 똑 같은 내용인데, 그걸 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건 굵아서 터진 거거든요. 굵아 터진 상처를 도려내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밴드만

붙여놓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2년짜리 공사인데, 1년 경과 전에 사고가 나서 한 달 정도 공사를 세웠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11개월 동안에 12개월에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1개월 동안에 현장에 대한 위험률은 확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겠는지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하는 기간들은 공사 기간에서 빼준다든지 아니면 이월을 시켜서 포함을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필요해요.”

○ 불안정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과실비율을 따져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 필요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건설 관계 이런 부분에 가보게 되면 노동자 패널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주는 벌금 과태료 이런 조항이 많은데, 노동자는 뭐가 있냐. 없잖아요. 보호구 그거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의식이 바뀌려면 노동자 개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조치 다 하고 보호구 다 지급했는데 본인 부주의로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안전관리자만 회사에서 문책당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감독받고 힘들어지는. 안전관리자도 노동자인데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전보건조치 미흡에 따른 벌칙은 사업주에게 더 강하게 묻는 게 맞지만.”

“노동부에서는 GDP가 3만불 이상,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와야 노동자가 개인 보호구를 직접 가지고 다니고 본인 과실로 하겠다는 걸 로드맵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왔잖아요. 이제 적용이 될 시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설안전기초교육에 보수교육 시스템 적용 필요

“모든 교육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만 보수교육이 없어요.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분들 어지간한 분은 다 받았어요. 90% 넘게. 신규 오시는 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건설현장에 가서야 하는데 원칙상 이 교육을 받으면 신규채용자 교육이 면제가 되거든요. 모든 건설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은 무조건 들어야 해요. 보수 교육이 없다 보니까 2012년에 교육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최근에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4시간 교육 내용이 변경됐어요. 이 내용들도 다시 한 번 숙지할 필요성이 있고, 현장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지 않냐고 하지만 정말 겹핍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서류 증빙만 남겨 놓는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 보니, 이렇듯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강제적인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 알아야 할 내용은 노동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건설업체 대표의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

“시공사 사장님들 별도로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 1군 건설회사 사장님들부터.”

“소장님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잖아요.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대표예요. 소장님도 월급쟁이다 보니까 사장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것들은 소장님이 아니라 사장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죠. 사장님의 안전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이걸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윤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안전관리를 이윤으로 생각하면 (안전관리비를) 못 쓴다는 거지, 이거는 투자를 해야지 사고가 안 난다는 인식이 딱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죠. 불법 재하도라든가 최저가 낙찰제는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죠. 안전총괄책임자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소장님들 오세요. 사장님들 오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한테까지 안전화 안 챙기면 일 못 한다는 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해요. 물론 사고가 70~80%는 중소기업 업체에서 나요. 그렇다고 원청들이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형평성 상 똑같은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 건설회사가 산재처리를 공상처리로 유도하는 이유는 산재율이 심사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

“발주처에서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걸 공상처리로 자꾸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공공기관들 기재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재해까지 다 넣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발주처에서는 일반 재해도 무조건 산재처리 하지 말고 공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기재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알고 바꿔 주셔야지 지금 건설사들도 일반 재해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현장 CCTV 스마트 안전, 작업자 감시에만 효과 좋은 것으로 분석

- 대기업 위주 안전관리자 1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노동자는 대부분 스마트 안전모 착용에 거부감 나타냄

“안전관리자 130명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120억 이상이죠. 주로 타겟이 300억 이상. 대기업 위주에서 40%가 응답합니다. 적용했느냐? 효과 있느냐? 적용하지 않았는데, 적용 예정이냐? 적용하지 않았는데,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3개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적용했던 현장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효과가 있다고 한 경우는 있는데, 어떤 점이 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인 재해 감소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작업자들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해요. 작업자에게 물어보게 되면 이거 불편하다. 개인정보가 나간다. 전자파 때문에 안 쓴다. 그래서 고의로 파손하고 하니까. 왜 이게 효과가 없냐 물어보면 현장과 안 맞다고 해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감시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 없다고 하거든요.”

“현장의 작업자 입장에서는 재네들 나를 감시해? 내가 화장실도 못 가게 해? 작업자는 그렇죠. 당연히 스마트 안전모 쓰려고 하면 배터리, 카메라 들어가고 불이니까 일단 무겁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와이파이 전파가 내 몸에 안 좋지 않냐?’ 정작 죽는다는 얘기까지 해요.”

VI <부록 1> 질문지

1. 건설 일용직 노동자 질문지

1.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얻고 계시는지요?

2. 현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 활동, 보호구 지급과 착용

2-1. 현장 곳곳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요? 미흡한 점은 어떠한 것인지요?

2-2. 현장 안전점검 활동(TBM, 위험성평가 등)은 하고 계신가요?

- (Y)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시나요?/ 실제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요?

- (N)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3 개인 보호구는 잘 지급이 되는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잘 착용하시는지요?

- (Y)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지급과 착용)

- (N)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지급과 착용)

3. 위험요인 대처 및 사고 처리 현황

3-1. 위험상황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 처리하시는지요?

3-2.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즉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3-3.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으신지요? 산재 발생 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3-4. 현장에서 사고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5. 산재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 위험정보 전달 및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방식

4-1. 현장 작업환경 내 유해·위험에 대한 정보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4-2. 현장 동료나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지요? 이들과는 어떻게 소통하시는지요?

5. 현재 또는 직전의 작업 분야는 무엇인가요?

- ① 일반 일용직 ② 전문 기능직 (직종 :)

6. 특수건강검진과 교육

6-1. 특수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작업환경측정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지요?

6-2.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요?(얼마에 한 번, 1회당 몇시간)

- (Y) 교육 내용이 현장의 실질적 위험 대응에 도움이 되셨나요?
- (N)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7. 지원사업 관련

7-1 노동자건강센터, 뇌심혈관질환 검진비용 지원 등 지원사업 안내 및 수용 가능 여부

7-2 현장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나 어려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건설 일용 노동자 일반현황〉

※ 이 설문 내용은 모니터링 기초 통계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즉시 폐기하며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이름 _____ ■ 나이 _____ 세

1. 일거리를 어떻게 찾으시는지요?

- ①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② 인력제공회사나 인력시장을 통해서 ③ 둘 다

2. 주로 어떤 규모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지요?

- ①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 건축 현장
② 1~2개 동의 원룸, 오피스텔, 상가 현장 건축 현장
③ 일반 소형 주택 공사
④ 도로, 지하철, 교량 등 토목 공사
⑤ 그때 그때 다르다

3. 현재 또는 직전의 작업 분야는 무엇인가요?

- ① 일반 일용직 ② 전문 기능직 (직종 : _____)

4. 건설업 현장 업무 경력은 몇 년인가요?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5. 월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_____ 원)

- ①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번 달의 소득은 얼마인가요? (_____ 원)
② 최근 1년간 가장 적게 번 달의 소득은 얼마인가요? (_____ 원)

6.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 ①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가입되어 있다
- ② 현장 일 시작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 ③ 가입한 적 없다

7.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 | |
|-------------------------|-------------------|
| ① 현장 반장이 병원비를 내고 치료해 줬다 | ② 내가 자비로 치료했다 |
| ③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줬다 | ④ 내가 직접 산재 처리를 했다 |
| 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줬다 | ⑥ 다친 적이 없다 |

〈외국인 건설 일용 노동자 일반현황〉

※ 이 설문 내용은 모니터링 기초 통계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즉시 폐기하며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이름 _____ ■ 나이 _____ 세
■ 국적 _____ ■ 입국 전 직업 _____

1.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① E-9 ② H-2 ③ F-4 ③ F-5 ④ F-6 ⑤ 미등록 ⑥ 기타()

2.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나요?(체류기간)

① 1년 미만 ② 3년 미만 ③ 5년 미만 ④ 10년 미만 ④ 기타()

3. 일거리를 어떻게 찾으시는지요?

① 고용센터를 통해서 ②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③ 인력제공사나 인력시장을 통해서 ④ 2, 3번 모두

4. 주로 어떤 규모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지요?

① 대형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 건축 현장
② 1~2개 동의 원룸, 오피스텔, 상가 현장 건축 현장
③ 일반 소형 주택 공사
④ 도로, 지하철, 교량 등 토목 공사
⑤ 그때 그때 다르다

5. 건설업 현장 업무 경력은 몇 년인가요?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6. 월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원)

- ①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번 달의 소득은 얼마인가요? (원)
② 최근 1년간 가장 적게 번 달의 소득은 얼마인가요? (원)

7.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① 현장 반장이 병원비를 내고 치료해 줬다 ② 내가 자비로 치료했다
③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줬다 ④ 내가 직접 산재 처리를 했다
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해줬다 ⑥ 다친 적이 없다

2.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질문지

1. 현장채용직, PJT채용직, 정규직의 차이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의 차이점이나 제약이 있는지요?

2. 현장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 활동, 보호구 지급과 착용

2-1. 공정과 작업상황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는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요? 미흡한 점은?

2-2. 작업 공정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활동(TBM, 위험성평가 등)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3.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2-4.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3. 위험요인 대처 및 사고 처리 현황

3-1. 수시로 변하는 작업 공정의 위험요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3-2. 급박한 위험상황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3-3. 산재 발생시 현장에서의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4. 현장에서 사고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5. 산재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 위험정보 전달 및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방식

4-1. 수시로 변하는 작업 공정의 위험정보 전달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 (Y)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요?

- (N)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2.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이들과는 어떻게 소통하시는지요?

5. 업무 환경

- 5-1. 서류 업무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지요?
- 5-2. 작성, 관리해야 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5-3. 서류업무 간소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 5-4.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요?

6. 지원사업 관련

- 6-1 노동자건강센터, 기술지원 등 지원사업 안내
- 6-2 현장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은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나 어려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건설안전·보건관리자 일반현황〉

※ 이 설문 내용은 모니터링 기초 통계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즉시 폐기하며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인)〉

1.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만 세)

2. 일하고 계신 직종은 무엇인가요?

① 안전관리자 ② 보건관리자 ③ 기타()

3. 현장 업무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년)

4.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① 현장채용직 ② PJT채용직 ③ 정규직 ④ 기타()

5. 현장 규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억원)

6. 안전관리부서 인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명)

7. 공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시설물(도로, 터널, 철도 등)
- ② 건축물(주택, 발전시설,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
- ③ 전문건설업(토공, 철물, 창호, 미장, 실내건축 등)
- ④ 기타()

8. 일일 출력인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명)

9. 월 평균 소득은 얼마인가요? (만원)

부 록 2

202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사업 안내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1
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8
3. 건강디딤돌 사업	13
4. 직종별 건강진단	18
5.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21
6.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 설치비용)	26
7.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28
8. 안전투자 혁신사업	31
9.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35
10.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39
11.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41
1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48
12-1. 안전분야	48
12-2. 화학분야	49
12-3. 보건분야	50
12-4. 건설분야	51
12-5. 서비스분야	53
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55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목적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 완납)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 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소기술 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신속지원 : 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클린사업장 인정	○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신속지원(Quick-Pass):사업장 당 최대 350만원까지(1회) ※ 고위험개선 소요금액의 70%지원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건설현장 당 3,000만원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안전방망: 공사금액 3억 미만(65%), 20억 미만(60%), 50억 미만(5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 건설용금속제품
 제조업(21809) ④ 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
 조업(21822)

◆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 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누리집 참고
 - 접속경로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관할지사 선택 > 알림마당

◆ 클린사업 추진절차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 Track1(기존방식)



● Track2(Quick-Pass)



2.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3.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지원설비품목

1.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의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손쳐내기식 안전장치, 수인식 안전장치,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재기동방지장치 등 장착)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끼임방지시설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혹))
- 천장크레인(3톤미만, 설비 구조물 불량에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한하며 투자완료 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비상정지스위치, 가동허가장치 등)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취출로봇, 호퍼로더) ※ 단, 호퍼로더는 단독지원 불가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지게차 캐빈 등)
- 추락방지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S마크), 안전블록세트, 채광창안전덮개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방호울공사 등)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기능포함 원격제어기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 및 복합가스농도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조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사회적 이슈품목(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등)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 설비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기)

2.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등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연동장치 등)
- 굴착기 및 로더 충돌재해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굴착기 AVM 일체형(카메라, 모니터, 통합제어장치, 접근감지센서 등)
- 굴착기 자동안전 킥커플러
-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3. 추락방지 안전시설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

- 시스템비계(인증제품) :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안전방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
- 사다리형 작업발판(S마크 인증품) : 최대높이 3.5m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현장 당 2개 이내

※ 보조대상 제외

- ①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
 -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④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
 - 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 목적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산재예방시설 융자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제외 대상〉 ① 융자금 지원 신청 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④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불가 ※ 단,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대출금리 : 고정연리 1.5%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총 10년) ○지원방법 : 사업자구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디드차타드) ※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택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융자사업 추진절차 참고)

◆ 우선지원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용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용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7조」 또는 「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 20) 또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 일선기관별 용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공단소개>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알림마당)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 ① 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 ④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불가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세부 제출서류(신청서 등)는 자료실 게시 양식 참조

○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필수 :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관할지역 연락처

1544-3088

3. 건강디딤돌 사업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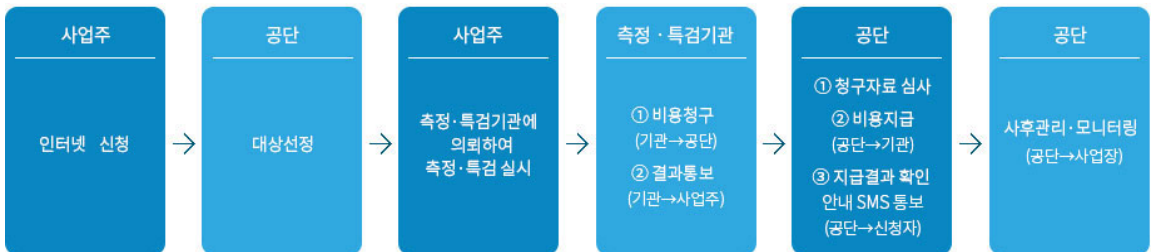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건강 디딤돌」사업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사업절차



◆ 지원대상

1.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 참고 : 5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50인 미만 여부 판단

◆ 지원금액

1. 작업환경측정

-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100만원) ※ 신규 측정사업장 : '20년부터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측정비용*의 80%를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40만원)

* 측정비용 : 공단 산정금액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지원대상에 따라 건강진단비용 차등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50인 미만	○ 30인 미만 : 특검비용* 전액 지원 ○ 30인 이상 50인 미만 : 특검비용*의 90% 지원
공동주택	○ 특검비용*의 90% 지원
건설일용직 (건설현장 공사금액** 기준)	○ 50억 미만 : 특검비용* 전액 지원 ○ 50억 이상 800억 미만 : 특검비용*의 80% 지원 ○ 800억 이상 : 특검비용*의 70% 지원

* 특검비용 : 공단 산정금액

**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한 공사금액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유해인자별 제 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함(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실시근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비용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누리집 공지 예정
 - 5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3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대상선정

- 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1. 공통

-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출력 방법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확인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선정 하되,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2.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3.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비용청구, 비용지급·결과 통보,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비용청구 :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 공단의 비용지급 :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공단은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 시 SMS 수신 불가)
-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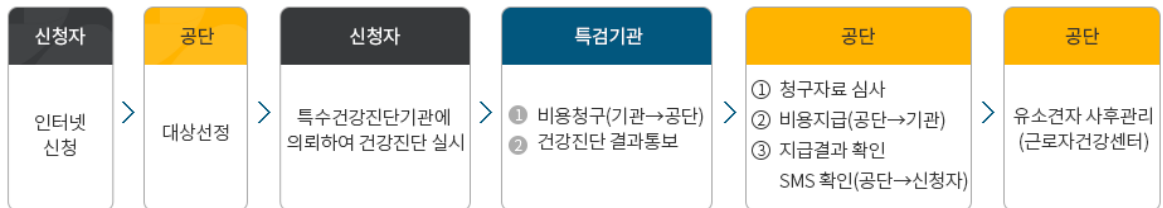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052-7030-500
-------------	--------------	-------------	--------------

4. 직종별 건강진단

◆ 목적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

◆ 사업절차



◆ 지원 대상

- '23년 신규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업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운전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환경미화원(30인 미만)
 - ※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자

◆ 지원 금액 : 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1·2차 항목)

직종	표적 질환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가전제품 수리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방문판매업자 · 골프장 캐디 · 소프트웨어 기술자	뇌·심혈관질환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 배송기사 · 화물차주	뇌·심혈관질환
건설기계운전자	호흡기질환, 뇌·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 신청 방법

- 공단 누리집에서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신청경로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사업 신청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 대상 선정

- 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수신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누리집을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출력방법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 결과 확인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 비용 청구 및 지급

- 건강진단 결과는 공단 K2B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 비용 청구
- (공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건강이상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 건강증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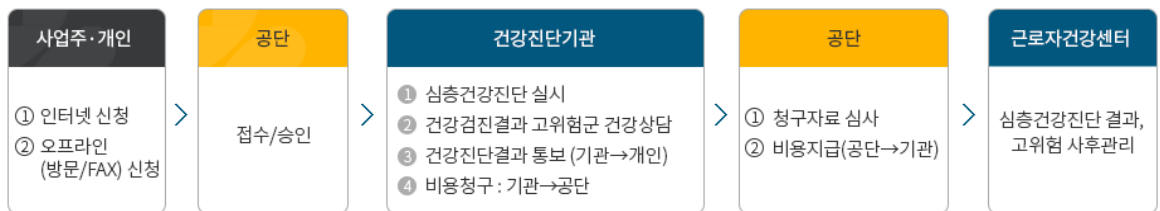
052-703-0652

5.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목적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자에게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질환 예방

◆ 사업절차



○ 신청방법

- 공단 누리집, 오프라인(검진기관 방문/FAX) 신청
 - ※ 누리집 신청경로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 ※ 예산 소진 시 신청 제한하며, 공지사항에 신청 중단 공지

○ 대상선정

- 신청한 검진 희망자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SMS 발송하고, 지원대상인 경우 검진 희망자 별로 건강진단 안내, 검진 시 준비사항, 유의사항 등을 SMS 전송
 -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신청자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 확인방법 : 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 심층건강진단 실시

- (예약)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 일정 예약

-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검진 실시
- (준비)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 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등) 중 1개를 사전 준비
- (방문)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② 공복혈당 126mg/dL 이상
- ③ 총콜레스테롤 $\geq 240\text{mg/dL}$ 또는 LDL $\geq 160\text{mg/dL}$ 또는 중성지방 $\geq 200\text{mg/dL}$
- ④ 비만(BMI ≥ 30) 또는 복부비만(남 $\geq 90\text{cm}$, 여 $\geq 85\text{cm}$)

-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 4)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 뇌혈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또는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해당 장기(뇌·심장) 치료 중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 지원대상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 검사항목 : 1. 기본검사, 2. 선택검사로 구분하여 건강진단 실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1. 기본검사

○ 지원금액 : 170,400원(기본 검사비용 213,000원의 80%)

※ 자부담금 42,600원(213,000원의 20%)

○ 검사항목 :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구분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검사 항목	① 문진 및 의사상담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① 신체계측 (키·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② 혈압 측정	① 공복혈당 ② 당화혈색소(HbA1c) ③ 총콜레스테롤 ④ HDL콜레스테롤 ⑤ 트리글리세라이드 ⑥ LDL콜레스테롤 ⑦ 혈청 크레아티닌 ⑧ 신사구체여과율(e-GFR) ⑨ 호모시스테인	① 요단백 ② 미량알부 민	① 경동맥 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 CT (석회화 점수) ③ 심전도

2. 선택검사

○ 지원금액 : 선택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지원대상

- 1) 총콜레스테롤 $\geq$ 310mg/dL
- 2) 고혈압 $\geq$ 180/110mmHg
- 3) 공복혈당 $\geq$ 126mg/dL 또는 당화혈색소 $\geq$ 6.5%
-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6)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도 5% 이상

7) 만 55세 이상 고령자

○ 검사항목 : 희망자에 한해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선택 1)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 항목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기본검사 비조영→조영으로 대체)	뇌혈관 MRA
인정 금액	12.5만원	12.5만원	20만원
지원 금액	10만원	10만원	16만원

◆ 사후관리

1. 건강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초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아 주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건강진단 의사가 인정하는 자
- (희망자)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

○ 지원방법 : 건강진단 결과 전문의 상담 실시

○ 지원금액 : 전액

○ 연간 지원횟수

- (초고위험군) 1인당 최대 10회, (희망자) 1인당 최대 5회

※ 지원주기는 1개월 이상

2. 추가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되거나 발병 우려가 있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건강진단 의사(전문의)가 인정한 자
- 검사항목 : 심층건강진단 선택검사 항목 중 건강진단 의사(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항목
 - ※ 건강진단 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초 건강진단 시 선택검사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불가
- 진단기관 : 심층건강진단기관 중 해당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실시
- 지원금액 : 선택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인정금액	12.5만원	20만원	20만원
지원금액	10만원	16만원	16만원

3.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자
- 지원방법 :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상담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상담 실시
 - 공단에서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 중 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건강진단 실시
 - ※ 지역별 심층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한 기관은 공지사항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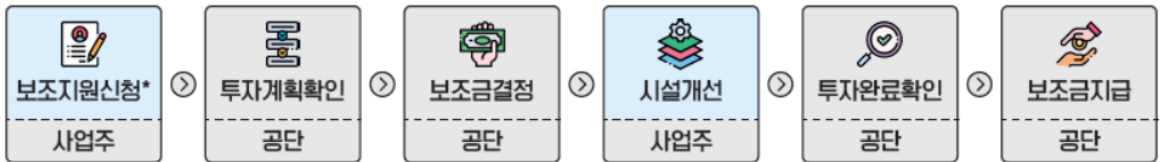
문의처 :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052-703-0649
-------------------	--------------

6. 건강ilter 조성지원(국소배기 설치비용)

◆ 목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지원절차



◆ 지원대상

- 가스, 증기, 미스트 흡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대상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 한도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흙은 최대 2천5백만원)
-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공단 판단금액의 50%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 공사원가계산 등을 검토한 공단의 판단금액

◆ 신청방법

- 공단 누리집 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 ※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지원품목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분진작업, 고열작업 또는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흙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분진작업, 고열작업 또는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흙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 지원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의 1항 2호(허용기준), 3호(금지물질), 4호(허가물질), 5호(작업환경측정), 7호(관리대상)가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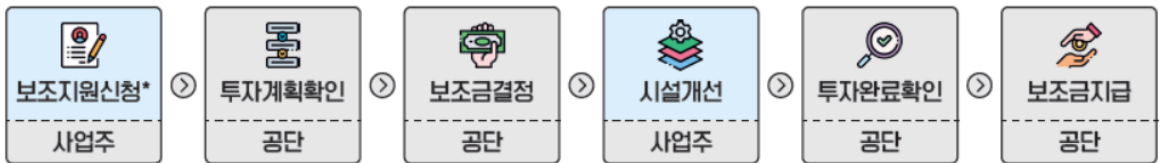
문의처 : 지역 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1644-8845
-----------------------	-----------

7.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 목적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지원절차



◆ 지원대상

- 개별휴게시설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 지원대상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⑤ 건설업(건설업 본사를 통한 건설현장 지원불가, 단 건설업 본사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정)
- 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 공동휴게시설 :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공동 휴게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

◆ 지원금액

○ 개별휴게시설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

지원비율	적용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70%	-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 7개 취약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보유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그 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 시 50% 지원

○ 공동휴게시설 : 최대 1억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신청 주제별 한도액
- 다수 사업주 신청 시 : 사업주 당 3천만원 초과지원 불가 (한도 예시 : 2개 사업장이 설치 시 6천만원, 4개 이상 사업장 신청시 1억원) -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 시 : 최대 1억원

◆ 신청방법(2023년 접수 마감)

○ 공단 누리집 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휴게시설)-공지사항의 신청 서식 활용

※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지원품목

- 휴게실 :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 ① 신규설치 :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② 개선 : 벽체·바닥·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기존 휴게실 리모델링 포함
 - ③ 컨테이너하우스·조립식 휴게실 : 부지 내에 설치하는 휴게실 전용의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실
- 휴게비품·설비 :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 ① 냉·난방기 : 휴게실 냉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18~28℃ 조절기능, 이동식 제외)
 - ② 쇼파·의자 : 휴게용 쇼파·의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 ③ 테이블·탁자 : 휴게용 테이블·탁자(휴게실 내부에 설치)
 - ④ 조명시설 : 휴게실 내부 조명 및 조도 조절장치(100~200lux 조절기능)

문의처 : 지역 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

1644-8845

8. 안전투자 혁신사업

◆ 안전투자 혁신사업이란?

사망사고 발생 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 3년간 9,084억원

◆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 교체

①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

- 카고형 이동식 크레인('09.9.30. 이전 생산 기계)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09.6.30. 이전 생산 기계)
-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원치식·유압식)

② 안전검사기계*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위험기계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에 한함

○ 공정개선

① 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업 중심)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

② 고위험 3대업종* 해당 사업장*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사업 목표 및 예산

- 연도별 사업목표 : 위험기계 및 뿌리산업 시장의 자발적 변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 사업 대상 : 15,487대, 개소
- 지원액 : 9,084억원

◆ 지원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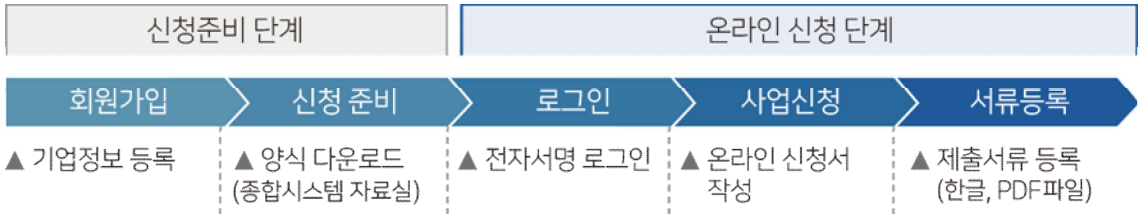
- 설비 제작 비 등 사업비 50%
 - 사업비 50% : 기계·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비, 기존 설비 해체 비용 등
- 사업비 등 지원 범위 및 조건

구분	①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교체	② 리프트 교체	③ 노후 위험기계 교체	④ 뿌리공정 개선	⑤ 고위험 3대 업종
교체용량	보유 용량 대비 교체 용량 제한 없음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	
지원금액	옵션과 관계없이 시장가격의 50%		최종 원가정산기관 정산 금액의 50%		
지원대상	이동식장비 실소유자 대상 ※ 임대 및 지입차주 등 참여 가능 (‘20.12.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공장 등 소유주		

- 투자기업은 지원 사업별 제출서류 일체를 사전 준비하여「안전투자 혁신 사업 종합 운영시스템 (이하, 종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 ※ 신청 기간은 공단에서 예산,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나누어 지정

◆ 신청방법

○ ○ 종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anto.kosha.or.kr>)



◆ 제출 서류

1. 공통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2) 산재보험 완납증명원(발행 후 3개월 이내)
-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
- 4) 견적서
- 5) 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2. 위험기계 교체

- 1) 자동차등록증(사본)(이동식 기계)
- 2)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동식 기계)
- 3) 안전검사 관련 서류(이동식 기계)
- 4) 장비 사진(이동식 기계)
- 5) 기계장치 명판이 훼손되어 모델명 및 제작연월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작증명서(첨부 자료 실 참조)
- 6) 사업계획서(리프트 노후위험기계)

3. 공정개선

1)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추진 성과, 기타

4. 뿌리업종

1) 사업계획서 :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 지원

※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사업추진 성과, 기타

◆ 지원 방식

○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또는 보조금 지원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금융 선수금 방식에 한해 진행

○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처리절차 도식도



문의처

1644-4555

9.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 목적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분소)를 설치하고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전문 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대상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을 통한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
 -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 작업환경(작업관리)와 관련된 상담
 - 안전보건교육
 - 이동 건강상담 등

◆ 구성인력, 운영시간, 이용요금

- 구성인력 : (작업환경)의학전문지,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
- 이용요금 : 전액 무료(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

◆ 센터 및 분소 현황(23개 센터, 21개 분소)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인천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광주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대구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경남근로자건강센터((주)터직업환경의학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울산근로자건강센터(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부천근로자건강센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충남근로자건강센터(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부산근로자건강센터(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전남 여주시 무선중앙로 23
대전근로자건강센터(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경산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전주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강원근로자건강센터(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제주근로자건강센터(제주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충북근로자건강센터((사)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사)직업건강협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성남분소(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김포양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대구달서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지하
완주분소(전주근로자건강센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창원분소(경남근로자건강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평택분소(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남양주분소(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군포분소(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148번길 17
구미분소(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영천분소(경산근로자건강센터)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광주광산분소(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대구달성분소(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양산분소(부산근로자건강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동3길 2
김포고촌분소(부천근로자건강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58번길 105-1
서울중구분소(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서울성동분소(서울서부근로자건강센터)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308호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울산북구분소(울산근로자건강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인천부평분소(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춘천분소(강원근로자건강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연동분소(제주근로자건강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아산분소(충남근로자건강센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문의처(전국 대표번호)	1577-6497

10.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 목적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대상 : 사건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사람, 1차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희생자의 유족,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찰, 소방관 및 응급서비스직에 종사(사고수습 등 업무 담당자)하는 사람 등
- 서비스 내용
 -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 일상 직장생활 복귀 도모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관리
 - 필요 시 전문치료 연계

◆ 구성인력, 운영시간, 이용요금

- 구성인력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
- 이용요금 : 전액 무료(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

◆ 센터 현황(근로자건강센터 내 설치·운영)

센터 및 분소명(운영기관명)	소재지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대전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대구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울산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전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제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문의처(전국 대표번호)	1588-6497

11.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 건강관리카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

번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 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홍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홍맥반 등)가 있는 사람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홍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2)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1)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하. 옥내에서 거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8	가. 염화비닐을 중합(결합 화합물화)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크롬산·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삼산화비스소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낮은 온도로 가열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5	비파괴검사(X-선)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 이상이었던 사람

◆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임. 아직도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노동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 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카드 소지자는 작업 전환이나 이직을 하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 지사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함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방법

- 건강관리카드는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
-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발급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카드를 발급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실시방법

- 현직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같음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는 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카드를 소지한 이직 노동자 등은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건강진단 비용은 노동자가 지불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지급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요청방법

- 이직 등의 사유로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카드소지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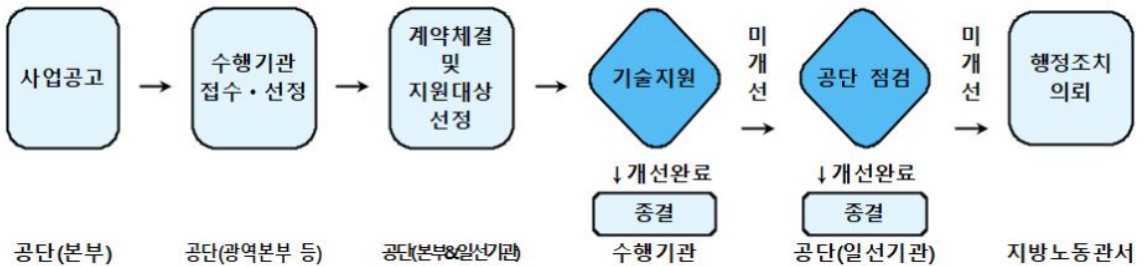


문의처(산업보건실)

052-703-0645

1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 사업 추진절차(분야별 공통)



12-1

안전 분야

◆ 목적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을 감소에 기여(사업물량 : 95,000회)

◆ 사업 추진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고위험사업장(위험기계·기구 보유 등) 우선 선정·지원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지원 내용(사업장당 최대 4회 지원)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3, 052-7030-776

12-2

화학 분야

◆ 목적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및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에 기여(사업물량 : 30,000회)

◆ 사업 추진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제조·취급·유통·설비 보유 사업장, 화학업종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우선 선정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지원 내용(사업장당 최대 4회 지원)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3, 052-7030-776

12-3

보건 분야

◆ 목적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사업물량 : 71,590회)

◆ 사업 추진방향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사업장 위험성 수준평가에 따른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 공단-고용노동부 점검·감독 연계, 재정지원 연계로 현장 작동성 강화

◆ 지원 내용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안전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4, 052-7030-789

12-4

건설 분야

◆ 목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사업물량 : 140,000회)

◆ 사업 추진방향

- 추락 등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고위험 건설현장 발굴·지원 강화
- 작업진행 상황 관찰 및 위험요인 확인·지원을 통째 사고사망 예방효과 극대화
- 1억원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원격지원 등 인적관리 강화
- 사업장 상세 현황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3-EAT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핵심 안전수칙 및 추락 등 사고사망 주요 위험요인 집중 확인 및 개선 지원

핵심 안전수칙	○ 추락 예방조치 :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막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 안전점검 실시 : 작업 전 안전점검(TBM) 실시
주요 위험요인	○ 지붕, 사다리,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고소작업차(대), 달비계, 철골,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사면·암반

※ 기타 사고성 재해발생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개선확인 : 보호구 미착용,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상주하여 조치완료 확인
- 안전교육 :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공유가 가능토록 맞춤형 standing 교육 실시(집합교육, 면담교육 등)
- 교육내용 : 핵심 안전수칙(추락·보호구·안전점검), 현장 주요 위험요인(안전조치 현황 및 대책)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3, 052-7030-776
--------------	----------------------------

12-5

서비스 분야

◆ 목적

50인 미만 서비스업 중 사고사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사고사망만인률 감소에 기여(사업물량 : 62,500회)

◆ 사업 추진방침

- 사업장 실태평가에 따른 등급별 차등관리를 통해 개선 실행력 강화, 예방자원 효율성 강화
- 사고사망 직접원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경영진 리더십 · 근로자 참여) 중점지원

- 건물관리업은 이동사다리 등에 의한 추락 재해예방에 집중 기술지원 실시
- 음식업 중 이륜차 배달원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직접고용사업장 및 실태평가 미흡·불량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 사회적 이슈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음식업종 조리종사자 호흡기질환 예방에 집중

◆ 지원 내용

① 사고사망 위험요인·필수 준수사항 지원 +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① 사고사망 위험요인·필수 준수사항 :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사고사망 위험요인	○ 건물관리업 ① 추락 : 이동식 사다리 ② 전도 : 계단 및 통로 ○ 음식업 ① 부딪힘 : 이륜차 ② 전도 : 계단 및 통로 ③ 끼임 : 조리기구
필수 준수사항	○ 위험성평가 ① 안내 : 위험성평가 제도 및 지원시스템(On Line, KRAS) ②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샘플링 실시 및 제공 ○ 핵심안전수칙 ① 추락예방 :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2인1조 작업 (이동식 사다리) 등 ② 끼임예방 : 방호장치 설치,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 ③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등

②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 : 사업주·노동자 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확인하고 차등 관리

문의처(민간협력사업부)

052-7030-774, 052-7030-789

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개요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참여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담수급 등)에 따른 제한 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사고 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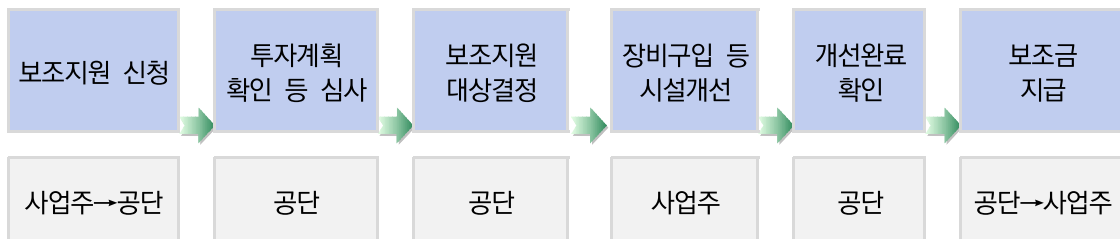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구분	취급품목
안전품목 (11개)	①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②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③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④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⑤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⑥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전도/충돌방지, 자동 서행·정지. 3종) ⑦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⑧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⑩ 인화성 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⑪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보건품목 (3개)	① 근력보조슈트 ②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③ 스마트 귀마개

◆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1. 공모신청

○ 신청기간

- 1차 : 2023년 4월 3일(월) 14시 ~ 4월 21일(금) 14시
- 2차 : 2023년 5월 말 예정
- ※ 2차 이후 신청접수 등은 1차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공급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출

-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③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 특수형태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⑤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⑥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⑦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이동식크레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 시
- ⑧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 참조

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로써 일부품목*에 대하여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함

*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 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⑪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2. 보조지원 결정

- 신청기간 종료 후 안전보건공단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지원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을 통해 확인 가능(5월中 예정)
 - 로그인 > 사업신청 내역 > 신청사업의 진행상태 확인 “결정통보”

3. 투자완료 및 확인요청

- 시설개선 :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확인요청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필요서류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출

4.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투자완료 확인 :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적정 여부,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등 지원품목 사양,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
 - ☞ 부적정한 경우, 1개월 보완기간 후 적정여부 확인(부적정시 결정 취소)

- 보조금 지급 :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지급일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23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

◆ 기타사항

- 부정수급 :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 지원금 환수 및 제한
- 사후관리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문의처(대표번호)

1544-3088